

2003년도
經 營 公 示 資 料

2004. 8.

預 金 保 險 公 社

차 례

I. 일 반 현 황	1
1. 설립근거 및 설립일자	1
2.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1
3. 조직 및 인원	3
4. 임원현황	5
5. 관련 법령 및 정관	5
II. 사업성과 관련사항	6
1.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6
2.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2
3. 2003년도 경영혁신 추진실적	21
4. 예산서	27
5. 재무제표	27
III. 기타 사항	34
1. 인건비 현황	34
2. 복리후생제도 현황	34
3. 퇴직금제도 현황	34
4. 내부 또는 외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35

I. 일 반 현 황

1. 설립근거 및 설립일자

□ 설립근거 법령 및 설립일자

- 설립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3조

제3조(설립)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①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②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한다.

- 설립일자 : 1996. 6. 1

2.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 설립목적

-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립

□ 주요기능

- 5개 금융권에 대한 보험회사로서의 기능
 -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파산선고 등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

○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한 보험료,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으로 예금보험기금 조성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자금 지원

-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 자금 지원 시 최소비용 검증 및 MOU 체결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상환

- 정부 출연금, 금융기관 특별기여금, 자체 회수자금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조성
-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25년간 단계적으로 상환

○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자금의 회수

-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실적 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파산배당 극대화를 위한 경영관리 및 파산재단 관리
- 출자주식 매각 등 출자금융기관의 민영화
-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매각

○ 리스크관리를 통한 금융부실의 사전 예방

-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경영리스크 분석
-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공동참여 및 조사

○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부실책임조사 및 책임 추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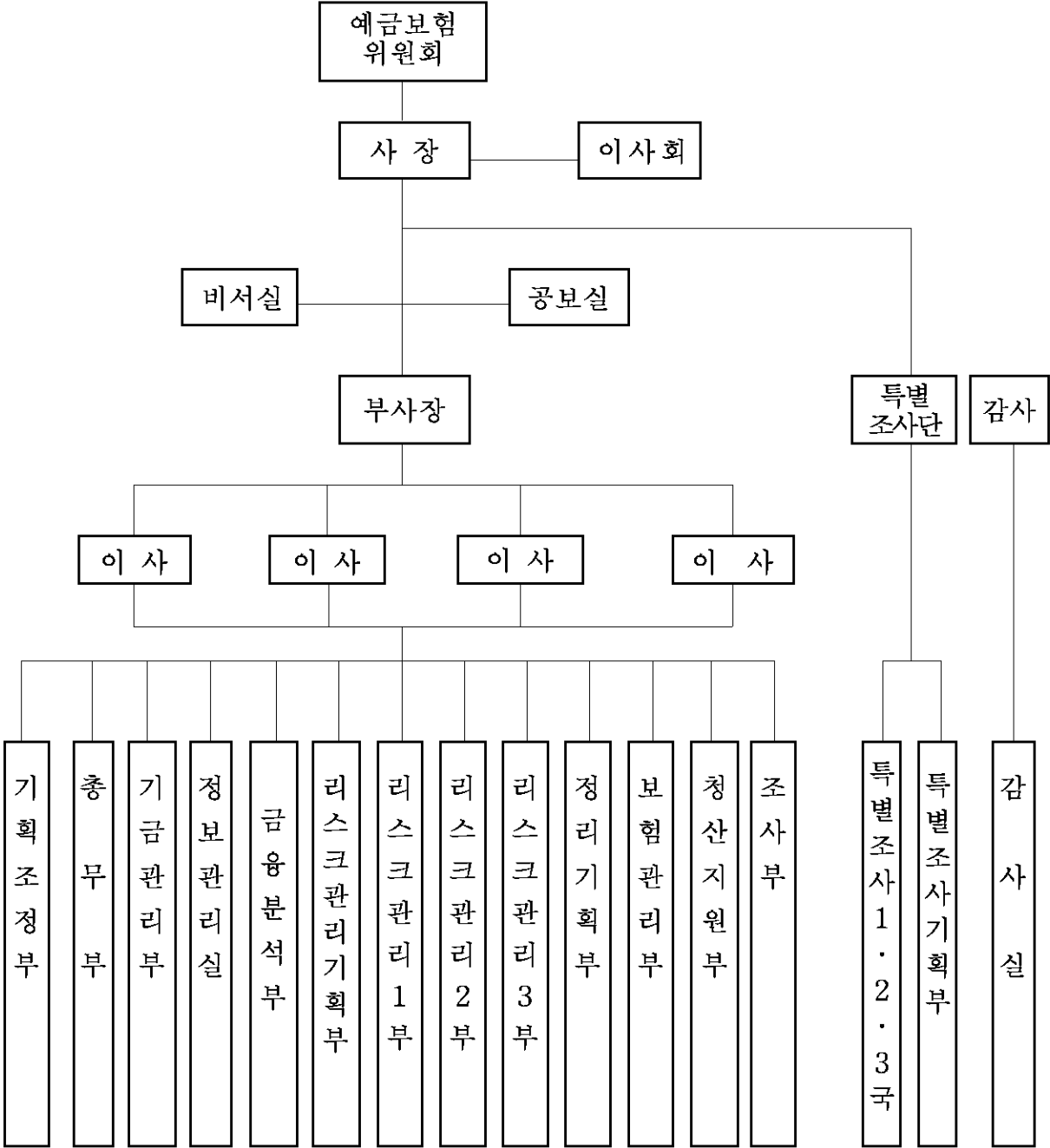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 부실채무기업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추궁

3. 조직 및 인원(2004.7월말 현재)

□ 조직현황 : 12부 4실 1단*(3국 1부)

* 임시조직(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 단장 윤진원)

< 기구도표 >



* 영남지사 별도

□ 인원현황

○ 임직원 : 총 690명(임원 7명, 일반직원 350명, 별정직원 333명)

(2004. 7월말 현재, 단위:명)

구분	임원	일반직				별정직*	합계
		1~2급	3~5급	사무직원	계		
인원	7	40	282	28	350	333	690

* 청·파산업무, 부실책임조사, 채권회수업무 등 일시적으로 증가한 업무에
6개월 계약직(특정직) 활용 및 소송업무 및 선진예금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연구
업무를 위하여 변호사, 박사 등을 전문직으로 채용

○ 최근 5년간 변동추이(임원제외)

(2004. 7월말 현재, 단위:명)

구분		'00년 말		'01년 말		'02년 말		'03년 말		'04.7월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일반직	인원	262	257	319	318	339	338	354	349	369	350
	증감	69	68	57	61	20	20	15	11	15	1
별정직	인원	188	180	379	346	439	408	354	349	337	333
	증감	188	74	191	166	60	62	△85	△59	△17	△16
계	인원	450	437	698	664	778	746	708	698	706	683
	증감	257	142	248	227	80	82	△70	△48	△2	△15

4. 임원현황

☐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학 력	주요경력	임기
사 장	이인원	서울대 상학과 美 밴더빌트대학원 졸업 (경제학 석사)	국제심판소 상임심판관 한국선물거래소 이사장	3년
부사장	김석원	경희대 행정학과 히또쓰바시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 겸 기획행정실장	〃
감 사	손방길	고려대 법학과	감사원 공보관 감사원 제2차장	〃
이 사	류연수	서울대 잠사학과	주택은행 종합기획부장 공사 총무부장	〃
이 사	김기진	건국대 경제학과 고베대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공사 기획조정부장	〃
이 사	이주형	서울대 정치학과 오레곤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부 참여정부 국제세미나 준비기획단장	〃
이 사	김동일	서강대 경영학 석사 美 뉴욕대 (재무·신용분석과정 수료)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공사 기획조정부장	

☐ 임원 선임방법

- 사 장 :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
- 부사장 및 이사 :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
- 감 사 :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

* 관계법령 : 예금자보호법 제11조

5. 관련 법령 및 정관

☐ 예금자보호법 : 별첨 1 (Page 49)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별첨 2 (Page 87)

☐ 예금보험공사 정관 : 별첨 3 (Page 104)

Ⅱ. 사업성과 관련 사항

1.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 공적자금 운용의 원활화

□ '03년말 현재 525개 부실금융기관에 104.9조원을 지원

※'03년 중 284개 부실금융기관에 2.4조원 지원

('03.12월말 현재, 단위 : 조원)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신협	계
상환기금	45.9	4.9	19.4	21.4	8.3	4.8	104.7
예보기금	-	-	-	-	0.08	0.15	0.23

□ '03년말 현재 상환기금 지원자금 중 24.3조원을 회수

※'03년중 5.5조원 회수

('03.12월말 현재)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대 출	합 계
지원(조원)	45.7	17.2	29.2	10.4	2.2	104.7
회수(조원)	6.2	2.0	10.1	4.7	1.3	24.3
회수율(%)	13.6	11.6	34.6	45.2	59.1	23.2*

* 동 회수율은 출연 등 사실상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금액을 포함하고, 출자지분의 미매각 등에 따른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며, 「'02년말 상환 대책」 수립 당시 공자위의 회수가능 추정액 대비 실효회수율은 66.0%임.

□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예보채 등 원리금 15.1조원 상환

○ 재정 부담분 : 12.7조원 (원금 9.7조원, 이자 3.0조원)

○ 공사 자체부담(이자 부분) : 2.4조원

나. 출자금육기관의 민영화 등 구조조정 추진

□ 출자금육기관의 민영화 추진

- 조흥은행을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매각('03.7)
 - 매각대금은 3.4조 원(현금:1.7조 원, 신한지주 우선주 91백만주, 1.7조 원 상당)으로 사후보상 등 정산에 따라 변동 가능
- 하나은행 주식(6,108만주) 중 20%*를 2,300억원에 매각('03.3)
 - ※ '02.12 공사보유 하나은행 지분(30.9%, 6108만주)중 10% 매각
- 우리금융지주회사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03.9)

□ 출자금육기관의 경영정상화 유도

- MOU 점검 결과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86건)를 통하여 경영 정상화 유도
 - ※ 임원해임요구 3건, 임원주의·엄중주의 27건, 직원주의·징계 요구 20건, 시정요구 36건 및 복리후생제도의 개선 금지 등
- 수검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및 MOU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수검기관의 설명회 방식(Presentation) 도입
 - ※ MOU 점검(28회) 중 우리카드 등에 대해 12회 실시

□ 보험사고 발생 금융기관에 대한 차질없는 업무처리

- 저축은행, 신협 등 138개 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실시

다.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확대

- '03년말 현재 445개 파산재단 중 185개 재단을 종결

※ '03년 중 96개 파산재단 종결

(‘03.12월말 현재, 단위 : 개)

총파산재단수	조기종결 대상	종결완료			파산진행		
		완전종결	사실상 종결*	소계	종결진행	파산진행	소계
445 (‘03년 실적)	261 (101)	48 (1)	137 (95)	185 (96)	76	186	262

* 실질적으로 파산절차가 종결되었으나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재단

□ 파산재단 운영의 효율화

- 파산업무 효율화를 위해 공사 법인격으로 파산관재인에 선임되도록 추진

※ '03년말 현재 파산진행 중인 262개 재단 중 256개의 파산관재인을 공사로 선임

- 영남지역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대구출장소* 개소 ('03.4월)

※ 대구출장소* 관할 : 전국 파산재단 수의 48%, 보험금청구소송 건수의 37% 차지

* 대구출장소를 영남지사로 개편('03.12)

□ 파산배당 회수실적의 제고

-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및 업무효율화로 파산배당 극대화

※ '03년도 회수목표액 2.4조원을 161% 초과한 3.9조원 회수

라.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 부실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추궁 추진

○ 부실금융기관

- '03년 12월말 현재 477개 기관에 대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1.5조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

(‘03.12월말 현재)

조사 기관수	부실 관련자수	소송제기 청구액	가압류 청구액	가처분 (건수)
477개	5,656명	15,283억원	13,460억원	889건

○ 부실채무기업

- '03년말 현재 170개('03년중 110개) 기업의 부실책임조사 실시

※ 대우 등 157개 현장조사 완료, 하이닉스 등 13개 현장조사 진행 중

- 손해청구 심의가 완료된 42개 기업 부실관련자 237명에 대하여 4,185억원 상당의 손해청구 및 채권보전조치

(‘03.12월말 현재)

피조사 기 업	피소송 기업수	소 송		가압류		가처분 건 수
		피고수	청구액	건 수	청구액	
170개	42개	237명	4,185억원	650건	2,971억원	144건

마. 상시위험관리체제 정착 강화

□ 공동검사 및 조사업무의 활성화 기반 구축

- 공동검사업무의 기반 확충을 위해 금감원과 공동검사 MOU를 체결('03.9)하고, 공동검사규정 제정('03.10) 및 사내연수·Workshop 실시('03.12)
 - * '03년 중 금감원 앞 검사요청은 저축은행 2건, 공동검사는 현투증권에 대하여 참여 요청을 하였으나 동 사의 매각 진행에 따라 미실시
- 부보금융기관의 특정현안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경영진 면담 중심의 현장조사 실시
 - * '03년 중 증권회사 1개(2회), 보험회사 2개, 저축은행 4개사 등

□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업무 추진

- 리스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부보금융기관 경영정보시스템(FIAS*)을 구축하고
 - * 금감원과 공유하고 있던 금융감독정보시스템(ISIS)을 대체하는 공사자체의 정보시스템(Financial Information Analysis Systems)
- 금융기관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대한 공유도 확대('02년말 51% → '03.11월말 93%)
- 또한, 은행·증권 등 권역별 리스크관리모형의 업그레이드 추진
-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징후 조기 포착 및 각종 금융관련 정보의 축적을 위한 「Data Room」 시범 운영('03.5)

□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양성

-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전문화를 위해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내강좌 개설

* '03년 중 CFA Level 1 시험에 34명, FRM 시험에 12명 합격

바. 공사 조직 개편

- 공사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03.12)

- 2개 부서 감축* : 13부 5실(1특조단, 1출장소) ⇒ 12부 4실 (1특조단, 1지사)

* 조사1부와 조사2부를 조사부로 통합, 법무실을 부서내실로 변경

- 대구출장소를 영남지사로 개편

리 스 크 관 리 기 능				보 험 기 능		정 리 기 능		조 사 기 능		연 구 기 능	지 원 기 능				기 타		영 남 지 사	감 사 실		
리 스 크 관 리 기 획 부	테 이 타 팀	리 스 크 관 리 1 부	리 스 크 관 리 2 부	리 스 크 관 리 3 부	기 금 관 리 부	보 험 관 리 부	정 리 기 획 부	청 산 지 원 부	청 산 총 결 실		조 사 부	특 조 단 — 특 별 조 사 기 획 부	금 용 분 석 부	기 획 조 정 부	법 무 실	총 무 부			인 력 개 발 실	안 전 관 리 실

2.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추진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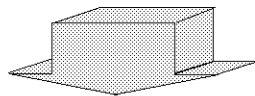
【 대내외 여건변화 】

금 융 환 경

- ◇ '03.1월 신기금 출범
- ◇ 구조조정의 지속 추진
- ◇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업 무 환 경

- ◇ 구조조정 사후관리업무의 점진적 감소
- ◇ 기금건전화를 위한 보험 사고예방업무의 증가



【 3대 기능 강화 】

리스크관리 체 제 정 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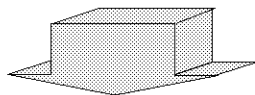
- ◇ 효율적 리스크 관리로 기금 손실의 최소화

공 적 자 금 회수 극대화

- ◇ 금융구조조정 업무의 철저한 사후관리

기금 건전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 ◇ 시장친화적 서비스 중심의 예금자보호 체제 강화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

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위험관리기능 강화

1) 사전위험관리업무의 실효성 제고

□ 부보금융기관의 리스크정보 확충

- Data Room*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장친화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조기 정착

* 리스크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함으로써 부보위험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사내 조직

-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투자은행 및 연구기관 등과의 금융기관 리스크정보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

- 「경영정보시스템」(FIAS)의 지속적 보완 및 동 시스템과 연계한 「예금동향분석」 방법 개선

- 금감원·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간 정보의 효율적 공유 및 활용을 통한 부보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 시장친화적 컨설팅 및 경영지도 강화

- 금융권역별 상시감시모형 및 Data Room을 활용해 개별 금융 기관의 리스크를 사전평가하고

- 동 평가결과를 컨설팅* 및 경영지도 등에 적극 활용

* 재무구조 취약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경영진단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영개선 유도

2) 조사·공동검사 활성화 및 리스크관리인력 전문화

□ 조사 및 공동검사 활성화를 통한 현장 확인기능 제고

-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대상기관에 대한 비공개 조사와 함께 필요시 공개조사도 실시
-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활성화 및 이상징후기관에 대한 금감원앞 검사 요청 등을 적극 활용

□ 리스크관리 담당직원의 실무능력 제고

- 리스크관리 등 핵심업무에 대한 사내맞춤연수 실시 및 CFA, FRM 등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내강좌 실시
- 실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 연수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전문가 초빙을 통한 선진 리스크관리기법 향상

3)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 추진

□ 차등보험료율 적용시기 및 대상 등을 구체화

- 재무 건전성 및 회계 투명성 등에서 여건이 성숙된 후 시행을 목표로 추진
- 각계의 의견수렴과 여건조성을 위하여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
- 예보법시행령의 개정 및 관련규정 제정 추진

나.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

□ 공적자금 상환계획 수립 및 관리

- 특별기여금의 수납 및 예보채상환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

- '04년 중 예보채 상환: 21.4조원(원금 16.6조원, 이자 4.8조원)

※ 정부출연 : 14.2조원, 공사 부담 : 7.2조원

□ 효율적인 기금조달체계 확립

- 상환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조달비용 최소화를 위해 상환기금채의 통합발행제도* 도입 등 발행방법 개선

* '특정회차채권' 발행일 이후 이자지급기간(3개월) 이내에 발행되는 채권을 같은 조건하에 거래되도록 발행조건을 정하는 제도

- 발행시기 정례화(월 1회), 발행규모 적정화(5천억~1조원), 발행조건 표준화(5년 만기채) 등

□ 기금운용체계 개선을 통한 수익성 제고

- 기금운용시스템 구축 및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 내실화를 통해 여유자금운용체계 개선
- 적정 유동성측정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지출의 비예측성에 따른 불필요한 보유자금을 최소화

다.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1) MOU체결 금융기관 관리의 효율성 제고

- MOU 체결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MOU 미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대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삭감 및 임원선임 자격 제한, 공사 직원의 사외이사 선임 등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 등을 사전 방지

2) 보유자산의 효율적 매각추진 등

□ 한투·대투증권 매각

- 기업가치실사 후 인수후보자 선정
- 인수후보자와의 매각협상을 통하여 하반기중 본계약 체결 추진

□ 우리금융지주회사 주식 매각

- '03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ADR 발행은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매각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Block-Sale 등도 함께 추진
- 시장상황 및 주가수준이 적절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내외 공모도 고려

□ 정리금융기관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

- 매각가능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ABS 발행, 일괄 또는 개별매각 등 추진
 - * '03년말 현재 잔여자산은 총 2.6조원으로 대부분 소송진행 등 악성채권이며, 매각이 쉽지 않은 자산으로 구성

- 잔여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시장매각 또는 공매위탁 등을 통한 회수노력 지속

□ 부실 신용협동조합 정리

- '03.12 신탁계정 이관이 연기('04.1.1→'10.1.1)됨에 따라 '03년말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신탁에 대한 정리업무는 공사가 계속 수행 ('03년말 현재 9개 부실신탁 정리중)

라. 파산재단관리의 효율화 및 파산배당 극대화

□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지속 추진

- '04년중 공적자금 조기회수를 위하여 총 90개 파산재단*의 조기 종결을 추진
 - 은행 4개, 증권 1개, 종금 14개, 금고 16개, 신탁 55개
- * '03년까지 총 445개 파산재단중 185개 종결

□ 파산재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파산관재인 재배치 및 복수재단 겸직 확대 등 관재인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재단 사무실 통·폐합, 파산재단 보조인의 적정인력 유지 등을 통한 운영경비 절감 추진 지속
- 영남지사를 통해 영남지역에 밀집된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도모
 - 관할법원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파산재단의 조기종결을 적극 추진

□ 파산배당 회수의 극대화

- 보유자산 관리강화로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자산유형별 적정처분 지도* 등을 통한 파산배당 극대화 추진

* 보유 부동산 합동공매, 비상장 주식 합동매각, Loan sale 등

마. 부실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추궁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의 지속 실시

- 200여개 부실 채무기업에 대한 신규조사 추진
-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 사안에 대하여는 「공적자금비리합동 단속반」과의 협조체제를 강화

□ 부실책임추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원활한 부실책임조사를 위하여 부실관련자의 불법 자금흐름 조사를 위한 공사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권 및 자료제공 대상 기관 및 자료범위 확대 등을 위한 예보법 개정을 추진

바. 예금보험기금 건전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 목표기금제 도입 추진

- 부보예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기금적립을 의무화하여 예금 보험기금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
- 기금적립*은 통상적인 보험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목표달성시에는 보험료감면 실시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경우 연방예금보험법에 부보예금의 1.25%를 적정기금 규모로 명문화

- 연구용역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 동 시행방안 마련시 부보금융기관의 의견 적극 수렴 예정

□ 시장친화적 서비스 중심의 예금자 보호

- 계층별·사업별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사업무 개선

- 사업수행 여론조사, 예금자 만족도 조사 및 업무성과지표 측정 등을 통한 업무개선 자료 수집 및 예금자들의 공감대 확산

- 시장친화적인 서비스기관으로의 업무 수행

- 금융권역별 예금보호범위 명확화 등 관련제도 보완을 통한 예금자 보호 강화

- 예금보험관련 표시제도업무* 개선을 통한 대 고객 서비스 제고

- * 부보금융기관의 수신상품이 예금보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동 내용을 통장 등에 표시하는 제도

- 신 금융(수신)상품에 대한 보험대상 여부의 신속한 판단 및 홍보 강화로 예금자 피해 최소화 도모

- 각종 예금자 문의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담을 위해 자동응답 시스템(ARS) 도입 추진

□ 주요국 예금보험기구와의 국제협력 강화

- 예금보험기구와의 정보 및 인적 교류 확대
 -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및 선진국 예금보험기구와의 정보 및 인적 교류 확대로 국내 예금보험제도를 선진화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
 - 후발 예금보험기구에 대해서는 MOU체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구조조정 경험을 전수
- 예금보험관련 국제회의 참가 등 확대
 - 예금보험을 주제로 하는 각종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교류 증대를 통하여 예금보험제도의 국제 규범화 노력 강화

3. 2003년도 경영혁신 추진실적

코드	과제 및 추진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Ⅰ	기 계획된 경영혁신 추진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		
Ⅱ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		
2-1 (완료)	○ 정원의 효율적 관리 - 정원 85명 감축 (3/4분기 50명, 4/4분기 35명)	'03.12	○ 감축대상 인원 85명 감축
2-2 (완료)	○ 조직의 기능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제고 - 리스크관련 부서의 강화 등 직제개편 - 효율적인 조직편성을 위한 부서별 직무분석 실시	'03.12	○ 조직 기능 재정비 - 리스크관리 기능강화 및 정리부문의 재정비를 위한 직제규정 개정(1.8) - 파산재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대구출장소 설치(4.1) - 외부 전문기관과의 직무분석 실시
2-3 (완료)	○ 인력운영의 효율화 - 공사전체 인원의 50% 이상을 계약직원으로 운영 - 사무·운전 등 단순업무직의 경우 시간제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등 Out-Sourcing을 적극 활용 - 전문성 및 순환보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인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	'03.12	○ 경영관리 마무리 및 파산재단 조기 종결 등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업무량 조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 2003년중 단기계약직 85명의 감축 계획을 수립·시행 · '03.11.30 현재 74명 감축 ○ 시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채용·재계약 실적 · 시기 : 수시 · 인원 : 총 72명
2-4 (완료)	○ 교육·훈련의 강화 - 핵심업무 관련 사내 맞춤형연수 과정 개설 - 직급별 필수 이수과정제 도입 -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연수 사후관리 및 인사와의 연계 강화	'03.12	○ 핵심업무관련 사내맞춤연수 개설 - 공동검사업무 연수 실시(12월) ○ 직급별 필수 이수과정제 도입 - 2004년 상반기중 도입 예정 (인력개발실 설치) ○ 전문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CFA·FRM 강좌 개설(6~12월) - 해외학술연수 실시(5월~계속) ○ 연수 사후관리 및 인사연계 강화 - 연수대상자 선정 및 승진 등 인사에 연수결과를 반영

코드	과제 및 추진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③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3-1 (완료)	○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 - 예산집행지침의 개선 및 예산관리부의 전산화 -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 분석 강화 - 섭외성 경비 등 경비용산의 절감 추진(971백만원)	'03.12	○ 예산집행의 효율화 - 해외여비 집행지침 등을 추가한 예산집행지침 개정(2.6) - 변경·추가된 제도 등이 예산관리전산시스템에 반영가능한지 여부 검토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실적분석 실시(매분기) - 예산절감방안 마련 및 시행(6.26)
3-2 (완료)	○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예금보험기금의 중장기 운용방안 검토 - 외국 예금보험기구의 기금운용 전략 연구 - 기금운용 담당직원의 전문성 제고 -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	'03.12	○ 외국 예금보험기구의 기금운용 전략 연구 - FDIC, 스페인·덴마크 예금보험기구, 미국교원연금 및 모건스탠리 펀드 등 방문조사 실시 (7월) ○ 기금운용 담당직원의 전문성 제고 - 금융시장 전문가 초빙 세미나 실시 (연 11회) - 금융연수원 자금운용과정 이수 1명 (11월) ○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 - 상품대체거래(Substitution Transaction)를 통한 5억원의 초과수익 실현 (5월) ○ 전산관리에 기반을 둔 기금운용시스템 구축 추진 - 기금운용시스템 구축 용역(한국채권연구원) : 6~7월 - 기금운용시스템 구축 용역계약 체결 (12월) - 기금운용시스템 개발 : '04.1~10월 ('04.10월 완료 계획)

코드	과제 및 추진내용	추진 시 한	세부추진실적
3-3 (완료)	○ 복리후생제도 운영의 합리화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정 출연 - 주택자금 대출이율을 국민주택 자금 대출이율 수준으로 조정	'03.3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정 출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의 기출연액 수준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 예산 승인을 얻어 최소금액* 출연 * 2.10 : 795백만원 출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자금 대출이율*을 국민주택자금 대출이율 수준으로 조정 * '02년 연6.0% → '03년 연6.5% ○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정 출연과 지원 사업의 합리화로 예산절감 및 직원 복지 향상 도모
[4]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4-1 (완료)	○ 부보금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 부보금융기관의 각종 재무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조회·분석 시스템 구축 -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03.12	○ 부보금융기관의 각종 재무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조회·분석 시스템 구축 - 현 금감원 ISIS 수준의 시스템 1차 가동 (7월)
4-2 (완료)	○ 전자조달(구매) 활성화 - 조달청 전자쇼핑몰을 통한 전자구매 실시(약 446백만원)	'03.12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구매로 비용절감 및 업무의 간소화·표준화 - 사무용가구 구매 등 15건 · 총 구매액 : 약 374백만원 · 수수료절감액 : 약 1.3백만원
4-3 (완료)	○ 민원처리절차 개선 - 민원인 1회 방문처리제 도입 등을 위한 민원사무처리규정 보완	'03.9	○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 - 유관기관 민원관련 규정 검토 및 초안작성 후 각부서 의견조회 완료 (10.20) - 법무실 심의 완료(12.11) - 이사회 의결 (12.16) ○ 클린신고센터, 친절·불친절 직원신고 센터 및 신고엽서제 시행(6.27)

코드	과제 및 추진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5]	대고객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경영투명성 제고		
5-1 (완료)	○ 정보공개제도 및 경영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 - 경영공시자료의 충실화 및 수시 보완 - 정보공개제도의 적극적 운영	'03.12	○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 -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실' 메뉴 신설(7월) · 공개청구 관련서식, 정보공개의 청구 및 조회기능 등 구축 - 주요문서목록 작성 및 홈페이지에 게재 · 정보접근 용이토록 조치 ○ 경영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용 - 경영공시자료 홈페이지에 게재(6월)
5-2 (완료)	○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예금자의 불편해소 - 예금자 편익증진을 위한 보험금지급규정 개정 - 경영관리전담팀 구성·운영	'03.12	○ 보험금지급규정 개정(3월) - 미지급이자 계산방법, 보험금 지급 순위, 대위상계 범위 및 방법의 변경 등 ○ 경영관리전담팀 구성 및 운영 - 관리인, 감독관, 부실책임조사 및 보험금 지급조사 담당자 등 총 5~6명으로 경영관리전담팀 구성 - 김천저축은행등 부보기관의 보험사고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
5-3 (완료)	○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 활성화 -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 이행 여부에 관한 점검 및 지도 강화 - 금융기관 신규상품의 예금보험 관계 문구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03.12	○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 점검 및 지도 - 1차 점검 : 은행(8월) - 2차 점검* : 상호저축은행(11월) * 서면점검실시 도입으로 저축은행의 업무부담 경감 도모 ○ 부보금융기관 예금보호상품 목록(보호예금등록부) 점검 및 심사(연중) ○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책자 및 팸플렛 제작·배포(6월)
5-4 (완료)	○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친화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 - 저축은행과의 간담회 실시 - 리스크평가시스템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 금융분석정보 및 업계 분석 자료 등의 적극적 공유	'03.12	○ 시장친화적 리스크관리서비스 제공 - 저축은행과의 간담회 실시(114개) - 리스크평가시스템의 평가 자료 및 경영자문단에 의한 컨설팅 등 금융서비스 제공(17개 저축은행)

코드	과제 및 추진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5-5 (완료)	○ 외부회계감사 도입 등을 통한 공사회계의 투명성 제고 - 자발적인 외부 회계감사 수검을 통한 공사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유용성 제고	'03.12	○ 200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결과 외부 감사 수검 - 감사기간 : 2. 24 ~ 2. 28 - 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2003회계연도 외부감사회계기관을 안진회계법인으로 선정(12.2) ○ 회계규정 정비 - 각 부서앞 회계규정 개정수요 파악(7월) - 회계규정 개정안 이사회 부의(12.23예정)
[6]	책임경영체제 및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6-1 (완료)	○ 성과관리시스템의 효율화 - 3급이상 직원에 대한 평가급 제도운영 및 다면평가제 도입 - 단기 계약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도 운영	'03.12	○ 연봉제 직원의 평가급 차등 지급 - 3급이상 연봉제 직원에 대하여 평가급 차등 지급(±5%) 실시(3.1) ○ 단기 계약직원(6개월)의 성과급 차등 지급 - 별정직원 특정직을 대상으로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급(30% 이내) 차등지급 실시(분기별) -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무성적평가를 통하여 재계약대상 직원 선발 등 기본자료로 활용 ○ 별정직원 전문직(박사, 변호사등)을 대상으로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조정(연1회)
6-2 (완료)	○ 예금보험위원회 활성화 - 소집개최 정례화 및 서면의결 최소화 - 안전 사전 검토기간 준수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사록 공개	'03.12	○ 예금보험위원회 활성화 - 소집개최 13회, 서면의결 3회 · 월2회(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안전 송부 - 회의종료후 2월 이내 공사 홈페이지에 의사록 공개

코드	과제 및 추진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6-3 (완료)	○ 부보금융기관 리스크관리 강화 - 부보금융기관별 리스크관리 전담자 지정 - 정보수집원천 다양화 및 리스크관리 파일 작성 - 분기별 리스크관리 파일 작성 및 보고	'03.12	○ 부보금융기관 리스크관리파일 작성 - 부보금융기관별 리스크관리 전담자 (AM) 지정 : 총 18개 은행(3월) - 분기별 리스크관리 파일 작성 - 국내부보은행 주요동향 분석보고서 (off-site monitoring report) 작성 ○ 시장지향적 리스크관리 추진 - Data Room 설치 및 운영 준비 - 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등 정보 수집원천 다양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6-4 (완료)	○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위한 파산재단의 관리 강화 - 재단의 운용효율성 제고 및 경비 절감 -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가치 극대화 추진 - 파산절차 조기종결 추진 - 파산재단 업무실적 분석	'03.12	○ 파산재단 관리강화 - '03년중 96개 재단의 파산절차가 조기 종결 완료(조기종결절차 진행 76개) * 공적자금 1,880억원 조기회수 및 재단운영경비 연평균 200억원 절감 - 종결재단 사후관리방안 마련 · 종결전담관재인 제도 시행 등 -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합동공매(11회) · 300건(낙찰가 기준 2,517억원) - 파산재단 사무실 통합(78건) - 파산관재인 종합업적평가 분기별 실시를 통한 성과급 차등 지급 - 파산재단 관리 규정·지침 제·개정 ○ 추진중 - 파산재단 보유 유가증권 합동매각 추진 - 파산재단관리 전산화 작업 추진 - 파산재단 근무자 인센티브제도 보완 · 우수파산재단, 파산관재인, 보조인 포상기준 제·개정 및 시행

4. 예산서

□ 연도별 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 예 산	20,027,116	41,024,379	63,218,075	75,485,270	81,569,194	85,426,342
자본예산	937,325	3,840,579	4,275,220	3,676,371	3,319,094	4,300,727
손익예산	19,089,791	37,183,800	58,942,855	71,808,899	78,250,099	81,125,615
인 건 비	8,678,778	17,140,336	30,456,578	38,311,295	42,809,867	45,425,192
경 비	9,534,500	18,701,464	25,076,183	30,321,786	32,381,944	33,920,180
감가 상각비	676,513	990,000	2,783,189	2,859,382	2,281,122	966,158
예 비 비	200,000	352,000	626,905	316,436	777,167	814,085

5. 재무제표

□ 회계의 구분

- 구분계리 : 공사의 회계는 예금보험기금회계,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회계, 공사회계로 구분
-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은행·증권회사·보험사업자·종합
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별로 각각 계정을 설치하고
각 계정을 상호 구분계리하되, 보험사업자의 경우 이를 다시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계리

※ 관계법령 :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

□ 기금회계 및 공사회계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가. 예금보험기금회계

대차대조표(예금보험기금)

(2003. 12. 31 현재)

(단위 : 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당 기
유동자산	1,256,068,443,515	유동부채	109,806,440,561
1. 운용자산	823,392,306,745	1. 지원부채	104,600,000,000
예치금	97,981,401,582	단기차입금	104,600,000,000
유가증권	725,410,905,163	2. 기타유동부채	5,206,440,561
2. 지원자산	0	고정부채	27,519,222,354
3. 기타유동자산	432,676,136,770	1. 지원부채	0
미수보험료	424,139,853,000	2. 지급준비금	27,519,222,354
기타의 유동자산	8,536,283,770	부채총계	137,325,662,915
고정자산	115,148,232,534	자본	
1. 지원자산	0	1. 예금보험기금	0
2. 구상채권자산	115,070,704,839	2. 기금잉여금	1,234,279,286,479
보험금지급구상채권	228,204,971,571	(당기순이익)	(1,234,279,286,479)
대손충당금	△114,413,392,855	3. 자본조정	△388,273,345
보험금미지급구상채권	2,441,771,62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88,273,345
대손충당금	△1,162,645,498		
3. 기타고정자산	77,527,695	자본총계	1,233,891,013,134
자산총계	1,371,216,676,049	부채 및 자본총계	1,371,216,676,049

손익계산서(예금보험기금)

(2003.1.1 ~ 2003.12.31)

(단위 : 원)

수 익	금 액	비 용	금 액
	당 기		당 기
기금관리비용	20,665,645,104	기금수익	940,080,998,920
1. 공사운영경비	19,742,300,166	1. 보험료수입	939,200,998,920
2. 여유자금운용비용	0	2. 출연금	880,000,000
3. 지원자금관련비용	923,344,938	기금운용수익	18,438,970,986
출연비용	0	1. 여유자금운용수익	18,438,970,986
차입금이자	906,668,268	예치금이자	6,717,745,309
예금보험기금채권이자	0	유가증권이자	11,721,225,677
기타	16,676,670	유가증권처분익	0
기금외비용	145,766,367,575	유가증권평가익	0
1. 대손상각비	115,639,616,658	2. 지원자금운용수익	0
2. 지급준비금전입액	27,519,222,354	기금외수익	442,191,329,252
3. 기타기금외비용	2,607,528,563	1. 계정간거래수익	0
비용총계	166,432,012,679	2. 기타기금외수익	442,191,329,252
당기순이익	1,234,279,286,479	수익총계	1,400,711,299,158

나. 상환기금회계

대차대조표 (상환기금)

2003. 12. 31 현재

(단위 : 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당 기
유동자산	9,008,494,310,946	유동부채	18,254,375,971,642
1. 운용자산	4,658,219,196,376	1. 지원부채	17,666,086,290,326
예치금	2,696,191,810,574	단기차입금	1,000,000,000,000
유가증권	1,962,027,385,802	예금보험기금채권	16,621,571,199,996
2. 지원자산	3,890,439,205,800	할증차금	55,601,310,204
단기대출금	21,167,323,287,226	할인차금	(11,086,219,874)
대손충당금	△17,276,884,081,426	2. 기타유동부채	588,289,681,316
3. 기타유동자산	459,835,908,770	고정부채	61,342,567,865,045
미수금	425,310,173,032	1. 지원부채	58,743,933,185,595
할인차금	(18,740,577,287)	예금보험기금채권	54,614,565,500,004
기타	53,266,313,025	할증차금	97,000,256,688
고정자산	12,503,327,714,258	할인차금	0
1. 지원자산	10,282,318,822,040	장기차입금	1,437,360,000,000
장기유가증권	8,111,574,398,771	교환사채	1,813,804,440,000
장기대출금	905,604,175,058	장기미지급비용	219,991,598,557
대손충당금	△386,194,096,293	미지급금	561,079,578,337
매수자산	1,651,334,344,504	파생상품부채	131,812,009
2. 구상채권자산	1,402,581,081,887	2. 지급준비금	2,598,634,679,450
구상채권	16,431,166,098,366	부채총계	79,596,943,836,687
대손충당금	△15,028,585,016,479	자본	
3. 기타고정자산	818,427,810,331	1. 예금보험기금	1,520,341,576,948
장기미수금	818,800,548,296	2. 기금잉여금	△59,179,132,561,574
할인차금	(11,313,885,440)	(당기순이익)	(27,202,053,943,034)
기타	10,941,147,475	3. 자본조정	△426,330,826,857
		자본총계	△58,085,121,811,483
자산총계	21,511,822,025,204	부채및자본총계	21,511,822,025,204

손익계산서(상환기금)

2003.1.1 ~ 2003. 12. 31

(단 위 : 원)

비 용	금 액	수 익	금 액
	당 기		당 기
기금관리비용	5,870,588,388,067	기금수익	13,318,333,826,746
1. 공사운영경비	50,210,270,619	1. 특별기여금수입	624,701,393,827
2. 여유자금운용비용	0	2. 보험료수입	4,636,981,591
3. 지원자금관련비용	5,820,378,117,448	3. 출연금	12,688,995,451,328
출연비용	173,424,409,855	기금운용수익	2,103,197,236,096
차입금이자	323,137,210,012	1. 여유자금운용수익	144,558,574,830
예금보험기금채권이자	5,249,613,401,914	예치금이자	81,798,631,066
예보채상환손실	45,989,744,000	유가증권이자	62,759,943,764
기타	28,213,351,667	유가증권처분이익	0
기금외비용	2,603,962,835,129	유가증권평가이익	0
1. 대손충당금전입액	0	2. 지원자금운용수익	1,958,638,661,266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0	배당금수익	64,236,832,863
3.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74,209,000,000	대출이자수익	1,145,171,993,562
4. 외화환산손실	2,604,680,000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0
5. 지급준비금전입액	2,059,634,679,450	지원자산처분이익	746,974,914,589
6. 기타기금외비용*	467,514,475,679	기타	2,254,920,252
		기금외수익	20,255,074,103,388
		1. 대손충당금환입액	983,060,278,832
		2. 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431,098,055,859
		3. 외화환산이익	5,667,480,000
		4. 지급준비금환입액	263,060,350,000
		5. 채무면제이익	18,559,431,999,370
비용총계	8,474,551,223,196	6. 기타	12,755,939,327
당기순이익	27,202,053,943,034	수익총계	35,676,605,166,230

다. 공사회계

대차대조표(공사회계)

(2003. 12. 31 현재)

(단위 : 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적립금	금 액
유동자산	17,460,865,165	유동부채	28,498,578,817
1. 당좌자산	17,460,865,165	1. 자본예산전입금	11,152,454,213
현금과예금	1,733,581,751	2. 미지급금	15,864,831,297
미수금	15,698,593,564	3. 미지급비용	503,856,760
미수수익	22,144,574	4. 예수금	977,436,547
선급비용	5,349,696		
선급법인세	1,195,580		
고정자산	11,154,817,213	고정부채	597
1. 투자자산	8,966,781,020	1. 퇴직급여충당금	9,901,563,693
보증금	8,310,691,200	(국민연금전환금)	△38,147,721
장기유가증권	16,086,000	(퇴직보험예치금)	△9,863,415,375
기타투자자산	640,003,820	부채총계	28,498,579,414
2. 유형자산	2,188,036,193	예금보험기금적립금	
임차부동산시설물	1,954,104,417	1. 예금보험기금	-
차량운반구	103,836,870	2. 이익잉여금	117,102,964
기타유형자산	8,534,146,620	(당기잉여금)	(△106,366,496)
(감가상각누계액)	△8,404,051,714	예금보험기금적립금총계	117,102,964
자산총계	28,615,682,378	부채 및 적립금 총계	28,615,682,378

손익계산서(공사회계)
(2003.1.1 ~ 2003.12.31)

(단위 : 원)

비 용	금 액	수 익	금 액
공사일반관리비	68,567,743,745	기금전입수익	68,029,797,294
1. 인건비	38,573,781,174	기금운용수익	431,579,955
2. 경비	26,068,864,840	1. 예치금이자	383,919,510
3. 충당금 전입액	3,925,059,586	2. 유가증권이자	1,140,942
4. 기타일반관리비	38,145	3. 기타수익	46,519,503
비용합계	68,567,743,745		
당기잉여금	△106,366,496	수익합계	68,461,377,249

III. 기타 사항

1. 인건비 현황

☐ 총인건비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금액	5,844,282	14,477,164	26,182,782	33,525,333	38,335,415

2. 퇴직금제도 현황

☐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기준지급률 : 근속기간 1년마다 평균임금의 1개월 분

3. 복리후생제도 현황

구분	내용
건강검진	○ 매년 1회 실시 - 40세 이상 : 종합검진 - 40세 미만 : 일반검진
학자보조금	○ 중고생 : 실비지원 ○ 대학생 : 용자
경조금	○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에 대하여 지원
의료보조비	○ 배우자등 피부양자에 한하여 지원
사내 동아리활동 지원	○ 축구부, 농구부 등 13개 동아리에 대하여 활동비 지원
합숙소 운영	○ 미혼직원을 위한 합숙소 7개소 운영

4. 내부 또는 외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 2003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조흥은행 매각과정상의 논란유발의 원인 및 그 결과의 보고 매각가격 인하압력, 회계실사기관 선정의 타당성, 보고체계, 매각 조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	□ 매각가격 인하압력 ○ 공사가 용역의 일정 관리, 당사자간 업무 연락 및 관련 자료의 용이한 전달을 위하여 회계법인 및 주간사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하여 - 일부 언론에서 공사가 매각가격 인하압력을 회계법인에 행사한 것과 같이 주장을 하였으나 - 이는 용역이 당초 목적·범위에 따라 수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 용역 발주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로 시장의 관행임 ○ 한편, 공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제기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03.5.20)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 중에 있음 □ 회계실사기관 선정의 타당성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제3평가기관을 선정키로 한 것은 조흥은행 가치 산정시 객관적인 평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동 방침에 의거 공사는 외부인사 중심으로 ‘제3평가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3개사(삼일,안진,안건) 중 이해상충관계가 없는 ‘안건회계법인’을 선정하였으나 - 동 법인이 선정된 이후 업무 제휴기관인 딜로이트투쉬의 권고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을 공사에 통지해 왔음 ○ 이에 공사는 여타 회계법인에게 제안서를 제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 2개사(하나, 신한)가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 이후 ‘하나회계법인’이 용역 포기의사를 밝혀 선정위원회는 ‘신한회계법인’을 제3평가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음 ○ 공자위는 신한회계법인이 업무경험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 조흥·신한은행의 외감법인인 안진·삼정 회계법인을 협의기관으로 참여시켜 각 평가 단계마다 협의 및 자문을 받도록 권고하였음 ○ 공사는 공자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선정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통하여 조흥은행의 가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조흥은행 매각관련 보고체계 ○ 조흥은행 가치 산정을 위한 제3평가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 사장이 일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 당시 공사의 보고체계에 따라 전결권자인 담당이사에게 상시 보고가 이루어졌었고, 사장에게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사후보고를 하였음 - 이러한 보고체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공사의 통상적인 업무 절차임 □ 조흥은행 매각조건 ○ 신한지주가 조흥은행 매입대가의 일부분(49%)을 상환우선주로 지급함에 따라 차입금을 통한 인수를 하였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 상환우선주는 상법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배당이 가능한 자본으로서 - 이익 유무에 상관없이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을 해야 하는 사채나 차입 등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 일부에서 상환우선주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차입금을 통한 인수’ 주장을 한 점을 고려하여 - 차후에는 매각조건 중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대책 마련 조흥은행 매각과정상 논란 사항을 숙지하여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매각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회계실사기관 선정의 공정성 도모, 회계기관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회계실사 진행, 실사과정 및 매각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체계의 강화를 통한 적절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향후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매각 등에 대한 매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보고	□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매각 등에 대한 매각 체계 재검토 및 개선대책 ○ 이해 당사자가 많아 공정한 가치 산정이 추가로 필요로 했던 조흥은행 매각의 경우, 공자위는 전문성보다는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성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제3평가기관을 선정하였음 ○ 공사는 현재 공적자금 투입기관 매각과 관련, 외부 전문가 및 공사 내부인사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성, 업무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용역기관을 선정한 후 - 이들 기관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도출된 매각가격을 토대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아울러 공사는 위 원칙의 지속적인 실천 및 개선을 위해 대투·한투 매각부터 용역기관 선정방안을 매각소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개편('03.11.14)한 바 있으며 - 매각작업 진행중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상황 및 중요사안에 대한 보고체계도 마련하여 원활한 매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한투 및 대투증권의 처리대책 강구 공적자금 투입 후에도 경영 정상화가 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사 등을 통한 정확한 잠재부실 규모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 여부와 필요시 적정한 투입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고	□ 한투·대투증권은 과거 부실 정리재원의 부족, 재무구조 취약, 영업 경쟁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과 주식시장 침체 등의 시장 여건 악화로 경영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음 ○ 특히, FY'02에는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로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한투 △1,883억원, 대투 △1,612억원) □ 공사는 한투·대투증권의 조기정상화를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자위 의결('03.11.7)을 거쳐 양 사의 공개매각(자산·부채이전 포함)을 추진하고 있으며, ○ '03.12월 매각자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04.1월 현재 부실규모, 매각구조, 매각가치 산정 등을 위한 자산·부채 및 법률 실사가 진행중임 □ 따라서 구체적인 부실규모, 공적자금 투입여부 및 투입예상액은 동 실사결과 및 매각구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 공사는 동 사항을 금년 상반기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매각심사소위원회 보고 및 의결을 통해 처리할 예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MOU 이행여부 확인 및 제재조치 강화 MOU 이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MOU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	☐ MOU 점검의 내실화 ○ MOU 점검 시 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MOU점검의 내실화 추진 ☐ MOU 조치의 실효성 제고 ○ 임원보수 지급 제한 - 임원 임종주의 이상의 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1회 조치시마다 성과급 지급률을 성과급 최고지급한도*의 일정률(예:15%)씩 차감 * 은행권 : 기본급의 150%, 비은행권 : 기본급의 100% - 회계연도 말 재무비율이 목표에 미달 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다음 년도 임원의 기본급을 동결 ○ 임원 선임제한 - 일정수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하여 연임, 승진 또는 MOU체결 타 금융기관 임원 선임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 * 해임 7년, 직무정지 5년, 임종주의 2회 이상 3년 ☐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을 개정하여 '04.2월부터 시행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율 제고 및 업무처리 개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율이 높지 않고 금융기관 권역별 승소율 등에 차등이 있으므로 승소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권역별 승소율 차등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여 소송 대응 전략을 재수립하는 한편, 소송제기·승소 및 패소 금액·승소 및 패소원인 등에 관한 통계자료가 즉시적으로 생산·활용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손배소송 관련 업무처리를 개선하도록 할 것	□ 권역별 승소율에 차등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저축은행 등 영세 금융기관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위법성의 입증이 용이한 경우가 많은 반면, ○ 보험, 중금 등 대형 금융기관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어 위법성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최근 법원에서도 당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영판단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공사는 각 금융기관 등에서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점검반」을 운영하여 논리적·체계적 변론 및 다양한 증거자료 제시 등이 가능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 임원의 경영판단과 관련된 외국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향후 손배소송 대상범위 결정에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각 파산재단 별로 진행되고 있어 통계자료의 취합 등에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 판결과 동시에 각 파산재단 등으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는 동시에, - 각 금융권별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작성·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극 보완, 체계화해 나갈 것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강화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선고가 1998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파산재단의 종결실적이 상승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파산재단의 조기종결의 지속 추진 ○ '01. 3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제정으로 공사 또는 공사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파산경과기간이 1년 이상된 재단중 파산업무의 효율성이 낮은 재단 등을 종결대상 재단으로 선정하여 파산법의 절차에 따라 조기종결 추진 ○ '01. 3~'03. 12월 말까지 총 447개 파산재단 중 261개 재단을 대상으로 조기종결절차를 추진하여 185개* 재단이 종결되고, 76개 재단은 그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 종결선고 재단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이 확정되면 종결선고가 가능한 재단 □ '04년은 조기종결업무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종결관련 조직을 청산지원부 내 청산종결실로 확대 개편 ○ 파산경과기간이 오래되고 자산규모가 큰 은행, 중금 등을 포함한 90개 재단을 종결할 예정임(목표 달성시 61.5% 종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예금보험공사 기능 및 구조의 재정비 예금보험공사의 내외적인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및 구조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 마련	□ 기금손실의 최소화 및 예보채상환기금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의 조직을 개편('03.12.24)하고 2004년도 업무계획을 수립('04.1.28) ○ 조직개편은 대내외 업무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개 부서 폐지 ○ 업무계획의 경우 「기금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리스크관리체제의 정착」,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시장친화적 예금자보호의 강화」 등 3대 기능 강화에 역점 <주요 내용> □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한 리스크관리체제의 정착 ○ 금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Data Room」 설치 및 리스크관리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총무부 내에 「인력개발실」 설치 등 리스크관리기능 강화 ○ 조사 및 공동검사 활성화를 통한 현장 확인기능 제고 → 기금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기능조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 조사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조사1·2부를 「조사부」로 개편하고, 파산종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산지원부 내에 「청산종결실」 설치 ○ 상환재원의 안정적 조달체계 확립 및 보유자산의 매각·관리강화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지속 추진 → 예보채상환기금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기능조정 □ 시장친화적 예금자보호의 강화 ○ 목표기금제 도입 및 표시제도업무 개선으로 기금건전화 및 고객서비스 제고 → 기금손실 최소화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상의 기능조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차등보험료율제의 조속한 시행 금융구조조정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금융구조조정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보험료를 금융기관별로 차등하여 부과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도입여건이 성숙된 은행권부터 1~2년 이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 그동안 동 제도 시행을 위한 내부준비를 대부분 완료 - 동 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실시('02년) - 등급산정 자동화 등을 위한 부보금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 완료('03년말) - 차등화지표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01, '02, '03상반기) 및 공사 내·외부의 기타 모형과 비교·검증 실시 등 ☐ 금년 중 대상 금융권 및 시행시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추진
(9) 예금보험공사의 지배구조 개선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을 비정부기관 추천으로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할 것	☐ 공사 내부인사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 ○ 금감위·한국은행의 민간위원 추천권(2인) 폐지 건의 추진 ○ 공사 부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공사 사장의 예보위원 1인 추천권 신설 ※ 예보위원 수(9인) 및 재정부·기획예산처의 민간위원 추천권은 현행유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상호저축은행 부실 대책 강구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증가되어 예금보험기금의 지출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 전담Desk제 활성화, 경영컨설팅 실시 등 시장친화적인 리스크관리 업무 추진으로 저축은행의 보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 ○ 전담Desk제 운영을 통한 저축은행의 사전리스크관리 강화 - 재무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을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03.12월말 현재 22개)하여 전담Desk제 운영 - 전담Desk제를 전체 저축은행('03.12월말 현재 114개)으로 확대·운영 계획 ○ 경영컨설팅의 적극 추진 - '03년 중 17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컨설팅 실시 - 저축은행 리스크평가시스템(MuREX*)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컨설팅 적극 추진 *Mutual savings bank Risk Evaluation eXpert system · '04년 중 30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추진 계획 ○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공동 참여 활성화 - '03년 중 재무구조 취약 저축은행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 요청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자료제출요구 15건, 부실우려인정조사 4건, 금감원 검사 요청 2건 등 - 예금자보호법상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되, 해당 저축은행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예금자 보호대책 2004년 1월 1일 예금보험기금의 자산부채가 신협중앙회로 이관됨에 따라 신협예금자의 예금보장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신협 예금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국회의원 발의로 예금자보호법 부칙을 개정('03.12)하여 신협중앙회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출범을 도모 ☐ 예금보험기금 신협계정의 자산과 부채 등의 이관을 신협중앙회 기금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적립될 수 있는 2010년 1월 1일까지 6년간 유예하도록 함 ☐ 신협계정 인수 관련 신협중앙회와의 양해각서 체결('03.4) ☐ 공사가 신협권 예금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축적하고 있는 각종 업무지식 및 기법 등을 중앙회에 제공하는데 적극 협조 ☐ 예금자보호기금 운영주체인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등 관리감독기관이 신협권 예금자 보호제도 기능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

< 별 첨 1 >

預金者保護法

制	定	1995. 12. 29	法律	第5042號
改	正	1997. 1. 13	法律	第5257號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 관한法律)	
改	正	1997. 8. 30	法律	第5403號
			(韓國住宅銀行法廢止法律)	
改	正	1997. 12. 13	法律	第5421號
改	正	1997. 12. 31	法律	第5492號
改	正	1998. 9. 16	法律	第5556號
改	正	1999. 1. 29	法律	第5702號
改	正	1999. 9. 7	法律	第6018號
			(農業協同組合法)	
改	正	2000. 1. 21	法律	第6173號
改	正	2000. 10. 23	法律	第6274號
			(金融持株會社法)	
改	正	2000. 12. 30	法律	第6323號
改	正	2001. 3. 28	法律	第6429號
			(相互信用金庫法)	
改	正	2002. 1. 26	法律	第6626號
			(민사소송법)	
改	正	2002. 12. 26	法律	第6807號
改	正	2003. 5. 29	法律	第6891號
			(보험업법)	
改	正	2003. 12. 31	法律	第7027號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金融機關이 破産등의 사유로 預金등을 지급할 수 없는 狀況에 對處하기 위하여 預金保險制度등을 효율적으로 運營함으로써 預金者등을 보호하고 金融制度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1997·12·3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7·12·31, 1998·9·16, 1999·9·7, 2000·12·30, 2001·3·28, 2003·5·29>

1. “附保金融機關”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한 預金保險의 적용대상 機關으로서 다음 各目の 1에 해당하는 金融機關을 말한다.

가. 銀行法 第8條第1項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金融機關

나. 韓國産業銀行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銀行

- 다. 中小企業銀行法에 의하여 設立된 中小企業銀行
 - 라. 삭제<1997·8·30>
 - 마.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改正 2002·12·26>
 - 사. 삭제<1999·9·7>
 - 아. 長期信用銀行法에 의한 長期信用銀行
 - 자. 銀行法 第58條第1項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外國金融機關의 國內支店 및 代理店(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金融機關의 國內支店 및 代理店을 제외한다)
 - 차. 證券去來法 第2條第8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證券業의 許可를 받은 證券會社(有價證券市場밖에서의 有價證券의 賣買 또는 賣買의 仲介業務만을 영위하는 證券會社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會社를 제외한다)
 - 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保險事業者(再保險 또는 保證保險事業을 주로 하는 保險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事業者를 제외한다) <개정 2003·5·29>
 - 타. 綜合金融會社에 관한法律에 의한 綜合金融會社
 -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하. 삭제<改正 2002·12·26>
2. “預金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가. 第1號 가목 내지 자목의 附保金融機關(이하 “銀行”이라 한다)이 預金·積金·賦金등에 의하여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債務를 부담함으로써 調達한 金錢과 信託業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元本이 補填되는 金錢信託등을 통하여 調達한 金錢
 - 나. 第1號 차목의 附保金融機關(이하 “證券會社”라 한다)이 顧客으로부터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預託받은 金錢
 - 다. 第1號 카목의 附保金融機關(이하 “保險事業者”라 한다)이 保險契約에 의하여 受入한 收入保險料
 - 라. 제1호 타목의 附保金融機關(이하 “綜合金融會社”라 한다) 및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法律에 의하여 綜合金融會社와 합병한 銀行 또는 證券會社가 綜合金融會社에 관한法律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어음의 발행과 不特定多數人을 대상으로 資金을 모아 이를 有價證券에 投資하여 그 受益金을 지급하는 金融商品에 의하여 調達한 金錢
 - 마. 第1號 파목의 附保金融機關(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계금·賦

金·預金 및 積金등에 의하여 調達한 金錢

바. 삭제<改正 2002·12·26>

3. “預金者등”이라 함은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預金등 債權을 가진 者를 말한다.
4. “預金등 債權”이라 함은 預金者등이 預金등 金融去來에 의하여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가지는 元金·元本·利子·利益·保險金 및 諸支給金 기타 약정된 金錢의 債權을 말한다.
5. “不實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の 1에 해당하는 附保金融機關을 말한다.

가. 經營狀態를 實査한 결과 負債가 資産을 초과하는 附保金融機關 또는 巨額의 金融事故 또는 不實債權의 발생으로 負債가 資産을 초과하게 되어 正常的인 經營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附保金融機關으로서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決定한 附保金融機關 <改正 2002·12·26>

나. 預金등 債權의 지급 또는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金의 償還이 정지상태에 있는 附保金融機關

다. 외부로부터의 資金支援 또는 별도의 借入(정상적인 金融去來에서 발생하는 借入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預金등 債權의 지급이나 借入金의 償還이 어렵다고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附保金融機關 <改正 2002·12·26>

- 5의2. “不實憂慮金融機關”이라 함은 財務構造가 취약하여 不實金融機關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決定하는 附保金融機關을 말한다. <改正 2002·12·26>

6. “資金支援”이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預金保險公社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預金保險基金(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各目の 것을 말한다. <改正 2002·12·26>

가. 資金의 貸出 또는 預置

나. 資産의 買受

다. 債務의 보증 또는 引受

라. 出資 또는 出捐

7. “保險事故”라 함은 다음 各目の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附保金融機關의 預金등 債權의 지급정지(이하 “第1種 保險事故”라 한

다)

나. 附保金融機關의 營業認可・許可의 取消, 解散決議 또는 破産宣告(이하 “第2種 保險事故”라 한다)

第2章 預金保險公社

第1節 通則

第3條 (設立) 이 法에 의한 預金保險制度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預金保險公社를 設立한다.

第4條 (法人格) ①預金保險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는 無資本特殊法人으로 한다.

②公社는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과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한다.

第5條 (登記) ①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公社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5조의2(사무소)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本條新設 2002·12·26]

第6條 (定款) ①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事務所의 所在地
4.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改正 2002·12·26>
5. 예금보험위원회에 관한 사항 <改正 2002·12·26>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7. 任員과 職員에 관한 사항
8.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9. 會計에 관한 사항

10.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公告의 방법

②公社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예금보험 위원회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8·9·16, 2002·12·26>

第7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社가 아닌 者는 預金保險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2節 예금보험위원회 <改正 2002·12·26>

第8條 (예금보험위원회) ①公社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2·12·26>

②委員會는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과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業務運營에 관한 基本方針을 수립하고 基金運用計劃등을 審議한다.

第9條 (委員會의 구성) ①委員會는 다음 9인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改正 1997·12·31, 1998·9·16, 2000·1·21, 2000·12·30>

1. 公社의 社長

2. 財政經濟部次官

3. 企劃豫算處次官

4. 金融監督委員會 副委員長

5. 韓國銀行副總裁

6. 삭제<2000·12·30>

7. 삭제<2000·12·30>

8. 삭제<2000·12·30>

9. 삭제<2000·12·30>

10. 삭제<2000·12·30>

11. 삭제<2000·12·30>

12. 삭제<2000·12·30>

13. 財政經濟部長官이 위촉하는 委員 1인과 企劃豫算處長官·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 및 韓國銀行 總裁가 각각 추천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위촉하는 委員 3인

②第1項第13號의 委員의 資格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7·12·31, 2000·1·21>

③第1項第13號의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改正 1997·12·31, 2000·1·21>

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2·26]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제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임기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때

②제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촉되는 경우 해촉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12·26]

第10條 (운영) ①委員會의 委員長은 公社의 社長이 된다.

②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한다.

③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第9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委員이 規定된 順序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1997·12·31, 2000·1·21>

④委員會는 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다만, 제3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신설 2002·12·26]

⑤ ~ ⑨삭제<2000·12·30>

⑩委員會는 委員會議事錄을 작성하고, 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⑪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附保金融機關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계 전

문가 등을 委員會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⑫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7·12·31, 2000·12·30>

第3節 任員 및 職員

第11條 (任員) ①公社에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4인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 <改正 1997·12·31, 2002·12·26>

②社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改正 1998·9·16>

③부사장 및 이사는 社長의 提請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1998·9·16, 2002·12·26>

④監事は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1998·9·16>

⑤사장·부사장·이사 및 監事(이하 “任員”이라 한다)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改正 2002·12·26>

⑥任員에 闕員이 있을 때에는 새로 任命하되, 그 任期는 任命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12條 (任員의 職務) ①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轄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業務를 分掌한다. <改正 2002·12·26>

③社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社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④監事は 公社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한다.

第13條 (任員의 身分保障) 任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任期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解任되지 아니한다.

1. 第16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때
3. 心身의 障礙로 인하여 職務의 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第14條 (理事會) ①公社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改正 2002·12·26>

③理事會는 公社의 業務에 관한 主要사항을 議決한다.

④社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⑤理事會는 구성원의 過半數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⑥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第15條 (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社長이 任免한다.

第15條의2 (代理人의 選任) ①社長은 부사장·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행위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改正 2002·12·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判上 代理人으로 選任될 수 있는 職員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15조의3(공무원등의 파견요청) ①사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파견기간·파견요청사유 및 자격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직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本條新設 2002·12·26]

第16條 (任職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任員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公社의 職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12·30>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17條 (兼職禁止義務등) ①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改正 2002·12·26>

② 삭제 <改正 2002·12·26>

③公社의 任員・職員 및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節 業務

第18條 (業務의 범위) ①公社는 이 法の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1997・12・31, 2000・12・30>

1. 預金保險基金의 관리 및 運用

1의2. 상환기금의 관리 및 運用 <新設 2002・12・26>

1의3. 제21조의2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使등

2.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規定에 의한 보험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수납 <改正 2002・12・26>

3. 第31條 및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등의 지급

4. 第35條의2 내지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不實金融機關의 정리등

5. 第1號 내지 第4號의 業務에 附帶하는 業務

6. 預金者등의 보호를 위하여 政府가 委託 또는 지정하는 業務

7. 기타 다른 法令에서 정하는 業務

②公社는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業務의 수행에 관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19條 削除<1997・12・31>

第20條 (業務의 代行) ①公社는 필요한 때에는 그 業務의 일부를 다른 機關(이하 “代行機關”이라 한다)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8・9・16, 1999・1・29>

②代行機關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 (附保金融機關에 대한 資料提出要求등) ①公社는 附保金融機關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不實金融機關 또는 제2조제5호의2의 規定에 의한 不實憂慮金融機關의 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規定에 의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算定 및 收納, 第31條 및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등의 計算 및 지급, 第35條의2 내지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不實金融機關의 整理 등의 業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業務 및 財産狀況에 관련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1997・12・31, 2000・10・23, 2000・12・30, 2002・12・

26>

②公社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등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附保金融機關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業務 및 財産狀況에 관하여 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1997·12·31, 2000·10·23, 2000·12·30, 2002·12·26>

③公社は 預金者등의 보호와 金融制度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監督院 院長(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附保金融機關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檢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附保金融機關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檢査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金融監督院長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31, 2000·10·23, 2002·12·26>

④公社は 預金者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院長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附保金融機關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資料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金融監督院長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1998·9·16, 2000·10·23, 2002·12·26>

⑤公사는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위험 여부 판단을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등을 통하여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新設 2002·12·26>

⑥公社は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保險事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金融監督委員會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金融監督委員會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第21條의2 (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使 등) ①公社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不實金融機關 또는 不實憂慮金融機關(이하 “不實金融機關등”이라 하며, 이 조에 한하여 그 清算法人 또는 破産財團을 포함한다)에게 그 不實 또는 不實憂慮에 責任이 있다고 인정되는 不實金融機關등의 前・現職 任・職員, 商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 不實金融機關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前・現職, 任・職員, 商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 및 人統領令이 정하는 主要株主를 포함한다) 기타 第三者(이하 “不實關聯者”라 한다)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請求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1. 第31條 및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의 지급을 決定하거나 保險金의 지급을 한 때
2. 第3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理金融機關이 營業 또는 契約의 讓受 또는 預金등 債權의 지급을 決定하거나 營業 또는 契約의 讓受 또는 預金등 債權의 지급을 한 때
3.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支援을 決定하거나 資金支援을 한 때
4. 삭제<2000・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요구는 그 이유・請求方法 및 請求期間을 기재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③公社は 不實金融機關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不實金融機關등을 代位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④公社は 不實金融機關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를 訴訟으로 하는 때에는 그 訴訟의 係屬중 당해 不實金融機關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訴訟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6>

⑤公社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行使하여 訴訟에서 勝訴하거나 不實金融機關등의 요청으로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參加를 하는 경우 그 費用은 당해 不實金融機關등이 부담한다.

⑥不實金融機關등이 破産한 경우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담하지 아니한 費用에 대한 請求權은 이를 財團債權으로 본다.

⑦公社は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요구, 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使 또는 訴訟參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不實金融機關등과 不實關聯者の 業務 및 財産狀況에 관한 調査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실관련자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한한다. <개정 2000・12・30, 2002・12・26>

⑧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不實金融機關등과의 合併이나 第3者에 의한 不實金融機關등의 引受이후 存續하는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公社는 당해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不實關聯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 또는 訴訟參加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附保金融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제7항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⑩제7항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본조신설 2000·1·21]

第21條의3 (資料提供의 요청) ①公社는 第21條의2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요구, 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使 또는 訴訟參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이하 이 條에서 “公共機關”이라 한다)의 長에게 不實關聯者의 財産에 관한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公共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第5節 財務 및 會計

第22條 (會計) 公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23條 (豫算과 決算) 公社의 豫算과 決算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1998·9·16>

第24條 (預金保險基金의 設置) ①第30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의 收納, 第31條 및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등의 지급, 第35條의2의 規定에 의한 預金등 債權의 買入, 第36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 第36條의5第3項 및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을 위하여 公社에 예금보험기금을 設置한다. <改正 1997·12·31, 1998·9·16, 2000·12·30, 2002·12·26>

②예금보험기금은 다음 各號의 財源을 그 收入으로 한다. <改正 1997·12·31, 1998·9·16, 2000·12·30, 2002·12·26>

1. 附保金融機關의 出捐金

2. 政府의 出捐金

2의2. 預金保險基金債券의 발행으로 造成한 資金

2의3. 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가 公社에 讓與한 國有財産

3.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4.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納한 保險料

4의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신설 2002·12·26>

4의3. 第3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한 預金등 債權을 回收한 資金

5.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不實金融機關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한 資金을 回收한 資金

6. 예금보험기금의 運用收益 기타의 收入金 <改正 2002·12·26>

③예금보험기금은 保險金, 預金保險基金債券의 元利金の 償還, 第3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者들에게 지급한 금액, 第36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金,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不實金融機關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資金과 그 附帶費用, 借入金과 그 利子の 償還 및 第2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운영에 필요한 資金을 관리하는 會計로의 轉出등을 그 支出로 한다. <改正 1997·12·31, 1998·9·16, 2000·12·30, 2002·12·26>

④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은 附保金融機關의 預金등의 殘額등을 감안하여 納入資本金 또는 出資金의 100分の 1(綜合金融會社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分の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附保金融機關별로 정하되, 그 납부금액·납부시기 및 납부방법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7·12·31, 2001·3·28>

第24條의2 (國有財産의 無償讓與) ①政府는 預金者保護 및 信用秩序의 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有財産法 第4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 第4條第4項의 雜種財産을 公社에 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與는 國務會議의 審議 및 大統領의 承認을 거쳐 미리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預金者保護 및 信用秩序의 安정을 위하여 緊切한 需要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國會의 事後承認을 받아야 한다.

[本條新設 1997·12·13]

第24條의3 (區分計理) ①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은 상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資金을 관리하는 회계와 區分計理하여야 한다. <新設 1998·9·

16> <改正 2002·12·26>

②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銀行·證券會社·保險事業者·綜合金融會社· 상호저축은행 및 信用協同組合별로 각각 計定을 設置하고 각 計定을 상호 區分計理하되, 保險事業者의 경우 이를 人保險과 損害保險으로 다시 區分計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2·12·26>

③第2項에 열거된 計定 상호간 資産 및 負債의 一括移轉, 貸出등의 去來, 公社와 第2項에 열거된 計定間의 去來 및 公社의 運營經費의 配定方法등은 委員會가 정한다. <改正 1998·9·16>

[本條新設 1997·12·31]

④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은 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다. <新設 2002·12·26>

第25條 (餘裕資金의 運用) 公社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의 餘裕資金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 <改正 1997·12·31, 1998·9·16, 2002·12·26>

1. 國債·公債 기타 委員會가 지정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2. 委員會가 지정하는 附保金融機關에의 預置
3. 기타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는 방법

第26條 (借入) ①公社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한국은행·부보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에 한한다. <改正 2002·12·26>

1.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
2.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제26조의3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규정된 지출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銀行으로부터의 借入의 元利金 償還에 대하여 保證할 수 있다. <新設 1997·12·31>

第26條의2 (預金保險基金債券의 발행등) ①公社는 預金者保護 및 信用秩序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改正 2002·12·26>

②公社가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毎回 그 금액, 조건과

발행 및 償還의 방법을 정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8·9·16, 2002·12·26>

③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가 정한다. <改正 2002·12·26>

④예금보험기금채권의 消滅時效는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한다. <改正 2002·12·26>

⑤政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元利金 償還에 대하여 保證할 수 있다. <改正 2002·12·26>

⑥예금보험기금채권은 證券去來法 第2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債券으로 본다. <改正 2002·12·26>

[本條新設 1997·12·31]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②상환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특별기여금
5.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6.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상환기금의 운용수익 그 밖의 수입금

③상환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보험금,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

5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
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인 경우

3. 차입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4.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
계로 전출하는 경우

④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本條新設 2002·12·26]

第6節 監督

第27條 (監督) ①財政經濟部長官은 公社의 業務를 指導·監督하고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1998·9·16>

②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公社의 처분이 違法한 때 또는 預金者들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
거나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改正 1998·9·16>

第28條 (보고·檢査등) ①財政經濟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社에
대하여 그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
로 하여금 公社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施設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하
게 할 수 있다. <改正 1998·9·1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이 檢査를 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
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3章 預金保險

第29條 (保險關係) ①公社와 附保金融機關 및 預金者등 사이의 保險關係는 預
金者등이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預金등 債權을 가지게 된 때에 成立한다. <改
正 1997·12·31>

②附保金融機關은 公社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關係의 成
立與否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新設 1997·12·31, 1998·9·16>

③公社は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關係 표시의 이행여부를 調査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第30條 (保險料의 납부등) ①각 附保金融機關은 매년 預金등의 殘額(保險事業者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を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에 1千分の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萬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萬원)을 年間保險料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附保金融機關別로 경영 및 財務狀況, 第2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각 計定別 積立金額등을 고려하여 그 比率을 다르게 할 수 있다. <改正 1998·9·16, 2003·5·29>

②公社は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減額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猶豫할 수 있다. <改正 1997·12·31, 2002·12·26>

1. 保險事故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保險事故에 관련된 附保金融機關
2. 財務狀況등에 비추어 預金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심히 곤란한 附保金融機關

③附保金融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延滯料를 加算하여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31>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와 延滯料의 납부방법·납부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公社は 保險事故가 발생한 附保金融機關이 납부하여야 할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出捐金,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國稅 및 地方稅 다음으로 다른 債權에 우선하여 辨濟받을 권리를 가진다. <改正 2002·12·26> <신설 2000·12·30>

第30條의2 (附保金融機關등의 秘密維持義務) 附保金融機關 및 그 任·職員(그 職에 있었던 者를 포함한다)은 第30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附保金融機關別로 다르게 策定된 保險料에 관한 내용을 廣告에 활용하거나 당해 附保金融機關의 任員·職員外의 一般人에게 公開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預金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0·1·21]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本條新設 2002·12·26]

第31條 (保險金등의 지급) ①公社は 附保金融機關에 保險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附保金融機關의 預金者등의 請求에 의하여 保險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第1種 保險事故에 대하여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의 支給決定이 있어야 한다. <改正 1997·12·31>

②公社は 第1種 保險事故의 경우 預金者등의 請求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預金者등의 預金등 債權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改正 1997·12·31>

③公社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의 開始日字·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④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 합병후 존속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부보금융기관은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 합병후 존속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부보금융기관과 합병 또는 전환으로 소멸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전의 부보금융기관이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02·12·26>

⑤第1種 保險事故가 발생한 후 第2種 保險事故가 발생한 경우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第2種 保險事故를 獨立된 保險事故로 보지 아니한다. <新設 1998·9·16>

⑥公社は 제1항의 규정에 의한 保險金을 지급함에 있어 預金者등이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不實關聯者에 해당되거나 不實關聯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預金者등의 預金등 債權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保險金 지급개시일 등의 公告知(이하 “保險金支給公告知日”이라 한다)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保險金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預金者등의 保險金請求權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의 開始日부터 5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신설 2000·1·21>

⑧公사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 금융기관이 예금자들에게 가지는 항변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新設 2002·12·26>

第32條 (保險金の 계산등)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각 預金者들에게 지급하는 保險金은 保險金支給公告日 현재 각 預金者등의 預金등 債權의 合計額에서 각 預金者등이 해당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지고 있는 債務(保證債務를 제외한다)의 合計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12·31, 1998·9·16, 2000·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은 1人當 國內總生産額,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12·30>

③각 預金者등이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保險金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에서 假支給金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각 預金者등에 대하여 지급된 假支給金の 금액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預金者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公社에 還給하여야 한다.

第33條 (保險事故등의 通知) ①附保金融機關은 保險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公社에 通知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②財政經濟部長官·金融監督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公社에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31, 1998·9·16>

1. 附保金融機關의 預金등 債權의 지급정지 또는 營業의 정지를 명한 때
2. 附保金融機關의 營業의 認可·許可를 取消하거나 解散決議를 認可한 때
3. 法院으로부터 破産法 第115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

第34條 (지급의 決定) ①公社는 第1種 保險事故의 경우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月 이내에 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保險金の 지급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31>

②公社は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1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第1項의 期限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1998・9・16>

第35條 (債權의 취득) 公社は 保險金 및 假支給金を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범위 안에서 不實金融機關에 대한 預金者등의 權利를 취득한다. <改正 1997・12・31>

第4章 不實金融機關의 정리등

第35條의2 (預金등 債權의 買入) ①公社は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を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保險事故와 관련된 預金등 債權을 買入할 수 있다.

②公社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등 債權을 買入하는 경우에 預金者등의 請求에 의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등 債權의 價値를 概算한 금액(이하 “概算支給金”이라 한다)을 預金者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社가 買入한 預金등 債權을 回收한 금액에서 소요된 費用을 공제한 금액이 概算支給金を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預金者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概算支給金은 公社가 預金者등으로부터 買入하는 預金등 債權의 價額을 保險金支給公告日을 기준으로 算定한 금액(保證債務를 지고 있는 預金者등의 保證債務에 상당하는 금액의 預金등 債權과 擔保權의 目的物로 되어 있는 預金등 債權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第35條의3의 規定에 의한 概算支給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1998・9・16>

[本條新設 1997・12・31]

第35條의3 (概算支給率) 公社は 第3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등 債權을 買入하는 경우에는 당해 不實金融機關의 財務狀況에 비추어 破産節次가 진행되는 경우 당해 不實金融機關과 관련된 預金등 債權에 대하여 辨濟받을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概算支給率을 決定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7・12・31]

第35條의4 (概算支給金 지급의 승인) 公社は 第3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概算支給金を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35條의3의 規定에 의한 概算支給率, 預

金등 債權의 買入期間·방법등을 정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1998·9·16>

[本條新設 1997·12·31]

第35條의5 (買入公告) 公社는 第35條의4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7·12·31]

第35條의6 (預金保險公社의 代位相計權) 公社는 預金者등을 대신하여 保險金 支給公告日 현재 각 預金者등의 預金등 債權(預金者등이 他人을 위하여 당해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擔保로 제공하고 있는 預金등 債權을 제외한다)과 각 預金者등이 해당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지고 있는 債務(保證債務을 제외한다)를 相計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8·9·16]

第35條의7 (管理人的 業務)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 관한法律 제14조의6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人으로 選任된 경우에는 그 業務에 관하여 第21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2·12·26>

[本조신설 2000·1·21]

第35條의8 (清算人 또는 破産管財人的 業務등) ①법원은 公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을 하는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公사가 자금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지원자금 등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파산법 제147조 및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선임에 관한 관련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改正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公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파산법 제157조·제187조·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2·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清算人으로 選任된 후 商法 第533條第1項 및 第5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으로 당해 株主總會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2·12·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清算人이나 破産管財人으로 選任된 경우에는 그 業務에 관하여 第21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0·12·30, 2002·12·2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은 그 任務에 대하여 報酬를 請求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수행상 소요된 正當한 經費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2002·12·26>

[본조신설 2000·1·21]

제35조의9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공사는 부보금융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험료로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第36條 (合併등의 알선) 公社는 預金者등의 보호 및 金融制度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不實金融機關등 또는 당해 不實金融機關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子會社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合併이나 營業의 讓渡·讓受 또는 제3자에 의한 引受(이하 “不實金融機關등의 合併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 있다. <改正 1997·12·31, 2000·12·30>

第36條의2 (契約移轉등의 요청) ①公社는 預金者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대하여 당해 不實金融機關에 대한 契約移轉의 命令, 破産申請등 필요한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의 요청을 받은 金融監督委員會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公社에 통보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7·12·31]

第36條의3 (整理金融機關의 設立등) ①公社는 預金者등의 보호 및 金融制度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不實金融機關의 營業 또는 契約을 讓受하거나 整理業務를 수행하기 위한 金融機關(이하 “整理金融機關”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改正 1998·9·16, 2000·1·21>

②整理金融機關은 株式會社로 한다.

③公社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整理金融機關의 定款을 작성하여야 한다. <新設 1998·9·16>

1. 目的
2. 명칭
3. 資本金의 總額
4. 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의 總數
5. 株式 1株當 金額
6.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7. 公告의 방법

④整理金融機關의 資本金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公社가 全額 出資한다. <改正 1998·9·16, 2002·12·26>

⑤整理金融機關은 銀行·證券會社·保險事業者·綜合金融會社·상호저축은행 또는 信用協同組合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不實金融機關의 정리와 관련된 범위안에서는 不實金融機關으로 보아 第35條 내지 第36條, 第37條 내지 第39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1·3·28>

[本條新設 1997·12·31]

第36條의4 (任員의 選任 및 權限등) ①整理金融機關에 社長 1人, 理事 2人 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

②社長·理事 및 監事は 公社가 選任한다. 이 경우 社長을 選任함에 있어서는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1998·9·16>

③社長은 整理金融機關을 代表하며, 그 業務를 統轄한다.

④公社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社長·理事 또는 監事を 解任할 수 있다. 이 경우 社長을 解任함에 있어서는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1998·9·16>

⑤당해 不實金融機關과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社長・理事 또는 監事로 選任될 수 없다.

⑥第12條第2項 내지 第4項・第14條 및 第15條는 整理金融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7・12・31]

第36條의5 (整理金融機關의 業務範圍등) ①整理金融機關은 預金등 債權의 지급, 貸出등 債權의 回收 기타 不實金融機關의 整理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業務로서 財政經濟部長官이 승인한 業務를 수행한다. <改正 1998・9・1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整理金融機關이 預金者등에게 지급하는 預金등 債權의 금액은 保險金 및 概算支給金을 한도로 하고, 그 支給額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에서 이를 공제한다. <改正 1998・9・16>

③公社는 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整理金融機關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資金支援을 할 수 있다.

④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整理金融機關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⑤金融監督院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整理金融機關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公社에 대하여 整理金融機關을 檢査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整理金融機關 또는 公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本條新設 1997・12・31]

第36條의6 (設立登記 및 公告) ①公社는 第3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整理金融機關을 設立한 때에는 整理金融機關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法院에 登記하여야 한다.

②公社는 整理金融機關을 設立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登記 및 第2項의 公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7・12・31]

第36條의7 (整理金融機關의 營業期間등) ①整理金融機關의 營業期間은 5年이 내로 한다. 다만,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營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1998・9・16, 2003・12・31>

②公社는 整理金融機關의 營業期間 만료, 整理金融機關과 附保金融機關간의 合

併, 營業의 讓渡・讓受 또는 第三者에 의한 整理金融機關의 引受등의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整理金融機關을 解散하여야 한다. <改正 1998・9・16>

③公社는 整理金融機關이 營業을 계속하는 것이 預金者등의 利益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整理金融機關을 解散할 수 있다. <改正 1998・9・16>

[本條新設 1997・12・31]

第36條의8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韓國銀行法・銀行法・證券去來法・保險業法・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 상호저축은행법・信用協同組合法 및 商法 第288條・第289條第1項 및 第2項・第295條・第297條 내지 第299條・第299條의2・第300條・第317條・第382條 내지 第385條・第389條第1項・第393條・第409條 내지 第410條・第517條 내지 第520條의 規定은 整理金融機關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8・9・16, 2001・3・28>

②整理金融機關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商法에 우선하여 이 法을 적용한다.

[本條新設 1997・12・31]

第37條 (資金支援의 申請) 不實金融機關등 또는 당해 不實金融機關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子會社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引受・合併하거나 그 營業을 讓受하고자 하는 者 또는 契約移轉을 받고자 하는 者는 公社에 資金支援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1998・9・16, 2000・12・30>

[全文改正 1997・12・31]

第38條 (附保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①公社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委員會의 의결에 따라 附保金融機關 또는 당해 附保金融機關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子會社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資金支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1. 제37조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申請이 있거나 不實金融機關등의 合併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預金者 보호 및 信用秩序의 안정을 위하여 不實金融機關등의 財務構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 관한 法律 제12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

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기준·방법·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1997·12·31, 2000·12·30>

第38條의2 삭제<2000·12·30>

第38條의3 (債權讓渡의 特例) ①公社 및 整理金融機關(이하 이 條에서 “公社 등”이라 한다)이 다음 各號의 1의 資産의 취득으로 인하여 指名債權을 讓渡받는 때에는 2개이상의 日刊新聞(全國을 普及地域으로 하는 日刊新聞이 1개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에 그 指名債權 讓受事實을 公告함으로써 民法 第450條의 規定에 의한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債務者·物上保證人 기타 이해관계인은 公告전에 당해 債權讓渡人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公社등에게 對抗할 수 있다.

1. 公社가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의 지급이나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등과 관련하여 讓渡받는 資産 <改正 2002·12·26>
2. 公社가 整理金融機關으로부터 讓渡받는 資産
3. 整理金融機關이 第36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와 관련하여 讓渡받는 資産

②公社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한 때에는 讓渡받은 債權과 관련된 資料를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節次는 委員會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①공사는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보험금지급 또는 자금지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부실금융기관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외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원칙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등) ①공사는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대상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목표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목표수준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목표수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6.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동결 등 당해 부보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공사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공사는 약정에 의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의 점검을 위하여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공사는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의 해임·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이 조 또는 약정에 의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하는 경우
3. 이 조 또는 약정에 의한 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본조신설 2002·12·26]

第39條 (業務繼續의 特例)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不實金融機關의 營業의 전부를 讓受한 附保金融機關의 業務에 관하여는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9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1997·1·13, 1997·12·31>

第5章 罰則

第4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
2. 第30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保金融機關別로 다르게 策定된 保險料에 관한 내용을 廣告에 활용하거나 公開 또는 누설한 者

[전문개정 2000·1·21]

第4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1條第1項 또는 第21條의2第8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資料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2. 第21條第2項 또는 第21條의2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전문개정 2000·1·21]

第42條 (刑法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①公社의 任員·職員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代行機關의 任員·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

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員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3條 (兩罰規定) 附保金融機關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附保金融機關의 業務에 관하여 第40條第2號 또는 第4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1997·12·31, 2000·1·21>

第44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0·1·21>

1. 第7條·第29條第2項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1998·9·16>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하는 者は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1998·9·16>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1998·9·16>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1998·9·16>

附則 <제5042호, 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6月 1일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章 및 第4章의 規定은 1997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設立委員會) ①財政經濟院長官은 이 法 公布日부터 3月 이내에 10人 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設立委員會를 구성하고, 公社의 設立準備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會는 公社의 定款을 작성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公社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를 완료한 때에는 그 事務와 財産을 公社의 社長에게 引繼하여야 하며, 設立委員은 引繼가 끝난 때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⑤設立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附保銀行 또는 關係機關의 同意를 얻어 그 任員 또는 職員을 派遣받아 그 業務를 처리할 수 있다.

⑥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設立委員會의 公社設立準備에 소요되는 經費를 出捐할 수 있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에 第11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16. 預金者保護法

附則(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257호, 1997·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預金者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중 “金融機關의合併및轉換에관한法律 第8條第1項”을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9條第1項”으로 한다.

④省略

第5條 省略

附則(韓國住宅銀行法) <제5403호, 1997·8·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내지 ⑦ 省略

⑧預金者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라目を 削除한다.

⑨ 및 ⑩省略

附則 <제5421호, 1997 · 12 · 13>

이 法은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5492호, 1997 · 12 · 31>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1998年 4月 1일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號 · 第5號 · 第5號의2, 第26條第2項, 第26條의2, 第37條 내지 第38條의2, 附則 第5條, 附則 第6條第1項 및 第3項, 附則 第7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附則 第7條의 規定은 1998年 3月 31일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②第1項 但書에서 열거한 規定의 施行에 있어 1998年 3月 31일까지 金融監督委員會의 權限은 第2條第1號 가目 및 자目的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同號 나目 내지 아目 및 同號 카目 내지 파目的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財政經濟院長官이, 同號 차目的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證券管理委員會가 각각 수행하며, 預金保險公社의 權限과 業務는 第2條第1號 가目 내지 자目的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預金保險公社가, 同號 차目的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證券管理委員會(第2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債券發行業務는 證券去來法 第6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會社)가, 同號 카目的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保險監督院이, 同號 타目 및 파目的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信用管理基金이 각각 수행하며, 運營委員會의 權限과 業務는 第2條第1號 가目 내지 자目的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預金保險公社의 運營委員會가, 同號 차目的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證券管理委員會가, 同號 카目的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保險保證基金管理委員會가, 同號 타目 및 파目的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信用管理基金의 運營委員會가 각각 수행하며, 預金保險基金은 第2條第1號 가目 내지 자目的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預金保險基金으로, 同號 차目的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證券投資者保護基金으로, 同號 카目的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保險保證基金으로, 同號 타目 및 파目的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는 信用管理基金으로 본다.

第2條 (一般的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監督院이 保險保證基金과 관련하여 행하거나 信用管理基金이 出捐金運用事業會計와 관련하여 행하거나 信用協同組合中央會가 信用協同組合安全基金과 관련하여 행한 認可 · 許可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預金保險公社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保證基金과 관련하여 保險監督院에

대하여 행하거나 出捐金運用事業會計와 관련하여 信用管理基金에 대하여 행하거나 信用協同組合安全基金과 관련하여 信用協同組合中央會에 대하여 행한 登録・申告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預金保險公社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第3條 (出捐金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綜合金融會社 및 相互信用金庫가 信用管理基金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認可를 받은 때에 信用管理基金에 납부한 出捐金과 信用協同組合安全基金이 信用協同組合法 第83條의 22의 規定에 의하여 收入한 出捐金은 이 法에 의한 預金保險基金에 대한 出捐金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保險事業者가 保險業法 第197條의10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保證基金에 납부한 出捐金, 綜合金融會社 및 相互信用金庫가 信用管理基金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매 事業年度가 종료된 후 信用管理基金에 납부한 出捐金 및 信用協同組合이 信用協同組合法 第83條의22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協同組合安全基金에 납부한 寄與金은 이 法에 의한 保險料로 본다.

③附則 第6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預金保險公社가 證券投資者保護基金에 대하여 貸出한 경우, 同 貸出金에 관한 證券投資者保護基金의 權利・義務는 1998年 4月 1日에 預金保險公社가 包括承繼한다.

第4條 (運營委員會 委員 및 預金保險公社의 任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9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된 委員과 預金保險公社의 任員은 이 法에 의한 委員 또는 任員이 위촉 또는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수행한다.

第5條 (關係職員의 派遣등) ①預金保險公社는 證券投資者保護基金, 保險保證基金, 信用管理基金의 出捐金運用事業會計, 信用協同組合安全基金의 統合을 準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業務를 담당하는 關係職員을 派遣받아 필요한 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預金保險公社는 이 法 施行후 1月이내에 각 基金별 事務와 資産目錄 및 現況에 관한 資料를 작성하고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院長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6條 (債券發行을 통하여 造成된 資金의 運用에 대한 特例) ①1998年 3月 31日 이전에 預金保險公社가 第2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債券을 발행하여 調達한 資金은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證券投資者保護基金・保險保證基金・信用管理基金 또는 信用協同組合安全基金에 貸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達한 資金은 1998年 4月 1日 이후 第2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預金保險基金의 該當計定の 부담으로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③信用管理基金法 第3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管理基

金이 預金保險公社로부터 貸出받은 資金은 特別計定으로 區分計理하여야 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信用管理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1項第4號중 “貸出”을 “出資, 貸出 및 相互信用金庫등이 發行하는 有價證券의 買入”으로 한다.

第8條 (信用管理基金의 豫算에 대한 지원) 이 法 施行후 金融監督院이 設立될 때까지 預金保險公社는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附則 第4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정해진 信用管理基金의 豫算에 소요되는 經費를 信用管理基金에 出捐할 수 있다.

附則 <제5556호, 1998·9·1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2號라目的 改正規定은 1998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保險料에 관한 적용례) 第3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納付義務가 발생하는 保險料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保險料率 限度에 관한 適用例) 第3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관하여 2008年 8月 31日까지 規制改革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각 附保金融機關이 매년 保險料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預金등의 殘額에 대한 比率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第30條第1項第1號 내지 第6號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2002·12·26>

第4條 (保險金등의 計算에 관한 適用例) ①第32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を 지급하기로 公告하여 지급되는 保險金부터 적용한다.

②第35條의2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第35條의5의 規定에 의하여 概算支給金を 지급하기로 公告하여 지급되는 概算支給金부터 적용한다.

第5條 (綜合金融會社가 보증한 어음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金融會社가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調達한 金錢은 第2條第2號라目的 改正規定에 의한 預金등으로 본다.

第6條 (整理金融機關에 대한 特例) ①이 法 施行당시 不實金融機關의 整理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설립된 金融機關(이하 이 條에서 “架橋金融機關”이라 한다)은 第36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設立된 整理金融機關으로 본다.

②이 법 施行전에 架橋金融機關이 행한 認可・許可 기타의 행위와 架橋金融機關에 대하여 행하여진 登録・申告 기타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整理金融機關이 행하거나 整理金融機關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施行당시의 架橋金融機關의 設立登記 및 設立公告는 이 법에 의한 整理金融機關의 設立登記 및 設立公告로 본다.

附則 <제5702호, 1999·1·29>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農業協同組合法) <제6018호, 1999·9·7>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2000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7條 省略

第1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預金者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目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同號 目을 削除한다.

마.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⑦省略

第19條 내지 第21條 省略

부칙 <제6173호, 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規制의 存續期限) ①第3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법 施行日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이 가진다.

②第30條의2의 改正規定은 行政規制基本法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要請을 거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 施行日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改正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중 第30條의2의 改正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한 후에도 第40條第2號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부칙(금융지주회사법) <제6274호, 2000·1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預金者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附保金融機關”을 “附保金融機關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당해 不實憂慮金融機關”을 “당해 不實憂慮金融機關 또는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不實金融機關”을 “당해 不實金融機關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323호, 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납보험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당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6429호,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마목중 “相互信用金庫”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24조제4항·제24조의3제2항 및 제36조의3제5항중 “相互信用金庫”를 각각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중 “相互信用金庫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 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후단중 “民事訴訟法 第65條 내지 第71條”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18>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807호, 2002·12·26>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하목, 동조제2호바목 및 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부사장 선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의 개정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사장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사인 자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초대 부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초대 부사장의 임기는 당해 이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상환기금의 재원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동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

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등으로 결정 또는 인정한 경우(당해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한 결정 또는 인정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새로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청산인 및 파산관재인에 관한 적용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8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제1호하목 및 동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조제1호하목 및 동조제2호바목에 의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공무원등의 파견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사에 파견된 파견직원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9조(상환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제외한다)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환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계정은 2010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하고, 같은 날 그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로 이관한다.

제10조(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②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중 “運營委員會”를 각각 “예금보험위원회”로 한다.

③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중 “예금보험기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한다.

④負擔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부칙(보험업법) <제6891호, 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중 “保險業法 第5條第1項”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保險業法 第98條”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保險業法 第98條”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⑦ 및 ⑧생략

제34조 생략

부칙<제7027호, 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별 첨 2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전문개정 1998. 7. 25 대통령령 제15842호
개 정 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1호
개 정 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 정 2000. 6. 7 대통령령 제16827호
개 정 2000. 8. 5 대통령령 제16936호
개 정 2000. 10. 31 대통령령 제16993호
개 정 2001. 3. 17 대통령령 제17149호
개 정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①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증권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1. 3. 17>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증권회사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

②법 제2조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업자”라 함은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1. 3. 17>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개정 2001. 3. 17>

3. 다른 부보금융기관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 <개정 2000. 8. 5>

2. 양도성 예금

3. 개발신탁

4. 채권의 발행

5.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③법 제2조제1호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고객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고객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2.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4.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고객에게 대부한 유가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중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보관된 금전

④법 제2조제1호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이하 “퇴직보험”이라 한다)계약외의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2.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3.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⑤ 및 ⑥ 삭제 <98·10·10>

제4조(설립등기) ①공사의 설립등기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4조의2(지사사무소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당해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본조신설 2002·12·30]

제5조(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개정 2002·12·30>

제6조(변경등기)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2·12·30]

제7조(대리인의 선임) ①공사의 사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6·7, 2002·12·30>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삭제 <2002·12·30>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00·6·7>
<개정 2001·3·17>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3·17, 2002·12·30>

②공사의 부사장·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17>

④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1·3·17>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2·12·30>

제12조(업무의 대행)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14>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부보금융기관
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개정 2002·12·30>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②공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게 업무의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제12조의2(부실우려 인정기준)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12조의3(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2. 임원의 임면 등 채무자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본조신설 2001·3·17]

제12조의4(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공사는 법 제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등 및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공사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17]

제12조의5(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본조신설 2000·6·7]

제13조(예산과 결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사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14조(출연금) ①부보금융기관은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다음 각호의 부보금융기관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은행 : 100분의 1
2. 증권회사 : 100분의 1
3. 보험사업자 : 100분의 1
4. 종합금융회사 : 100분의 5

5. 법 제2조제1호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 100분의 5
<개정 2002·12·30>

6. 법 제2조제1호하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 : 100분의 1

②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의 부보금융기관별 계정의 적립액이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이하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자(이하 “예금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해당 부보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추가로 출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추가출연금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납부한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7, 2002·12·30>

③부보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연금을 공사에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02·12·30>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①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별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차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
2. 차입금액
3. 차입이자율,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4. 차입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③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또는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용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98·10·10, 2000·6·7, 2002·12·30>

1.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개정 2002·12·30>
2. 증권금융회사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6.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①부보금융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별표 1]의 산식에 의한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보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7>

③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보험료(예금보험의 보험료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98·10·10> <개정 2000·8·5>

1.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보험계약상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배당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 : 보험의 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 나. 지급할 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정보험금다. 보험금등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그 소송가액
3.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금액

제1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①부보금융기관은 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산식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보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기여금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6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보험료(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17조(가지급금 등) ①공사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3·17>

②공사는 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기간·방법등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각 1개 이상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 또는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등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17조의2(특수관계의 범위)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예금자등이 부실관련자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3·17]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담보제공채권”이라 한다)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때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98·10·10>

②공사는 제1항 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0·10, 2001·3·17>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
3. 보험금의 지급보류기간
4.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기업 또는 단체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보금융기관이 해당 근로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0·10>

④증권회사에 보험금 지급공고일이전에 예금자등에 의하여 유가증권이 매매(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의 최종적인 결제와 증권거래법시행령에 의한 유가증권옵션의 행사를 포함한다)되어 보험금 지급공고일 후에 대금이 결제되는 때에는 그 결제되는 대금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계산하며 그 대금이 결제되는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98·10·10>

⑤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사업자에 대한 예금등 채권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⑥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0·10·31>

제19조(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7>

제19조의2(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법 제35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보금융기관을 제외한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부보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한 결과가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보금융기관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
3. 법 제2조제1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주된 사무소에서 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과 같은 성격의 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부보금융기관

②공사는 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부보금융기관은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월(부보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공사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17]

제20조(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①공사는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무

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부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라 한다)가 지연되어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때

2. 부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 심히 곤란하여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때

②공사는 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을 정리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정리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공사는 법 제36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금융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기) ①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기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설립승인을 얻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자본의 총액
4. 발행주식의 총수
5. 주식 1주당 금액
6. 임원의 성명 및 주소
7. 주된 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
8. 공고의 방법

제23조(정리금융기관의 이전등기 등) 제5조 내지 제8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정리금융기관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기기간의 기산 및 설립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정리금융기관의 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공사의 사장의 신청에 의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정리금융기관의 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①법 제3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전까지 당해 부보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리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부실금융기관등인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사가 금융기관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의 자본감소,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상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②법 제38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법 제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 임·직원 1인당 생산성

④법 제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4조의3(약정의 비공개) 법 제38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또는 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2·12·30]

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의 대리급이상의 직원
2. 대행기관의 직원으로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대리

급이상의 직원. 다만,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98·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에 한한다) 및 제2호, 제18조제5항,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사업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3항제3호 및 제4호·제4항제1호(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인 보험계약중 보증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종전의 대통령령 제15525호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2.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3.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사업자가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제3조(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보험료납부에 관한 특례) 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이 영 시행후 2월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금의 계산방식에 관한 특례) ①1998년 8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보험사업자에 대한 예금등 채권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금액. 다만,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그 최고한도로 한다.
2.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 예금등의 금액. 다만, 보험사업자에 대한 예금등 채권의 금액이 예금등의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998년 8월 1일 이후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자등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등중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미리 정한 특정액을 정기로 입금하는 예금등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가입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예금자등에게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천만원으로 한다.

②이 영 공포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은행의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분기분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공포일 전일분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이 영 공포일분부터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②증권회사·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8년 4월 1일부터 이 영 공포일 전일분까지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1999년 3월 31일분까지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③상호신용금고가 1998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분까지는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전의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1998년 4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분까지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④상호신용금고의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이 영 공포일 전일분까지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

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분까지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⑤신용협동조합의 1998년도분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는 1998년 3월 31일분까지는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4월 1일분부터 이 영 공포일 전일분까지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하며, 이 영 공포일분부터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되, 신용협동조합이 동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분 보험료로 종전의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 납부한 금액은 이를 차감한다.

부 칙 <98·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⑯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0·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산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6조제3항 및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이 영 시행일 이후분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부 칙 <2000·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중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예금(이하 “결제성 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성 예금의 범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2001 · 3 ·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 12 · 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관련)

부보금융기관	산 식
1. 은행	분기별보험료=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times\frac{10}{1\text{만}}\times\frac{1}{4}$
2. 증권회사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times\frac{20}{1\text{만}}$
3. 보험사업자	연간보험료=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times\frac{30}{1\text{만}}$
4. 종합금융회사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times\frac{30}{1\text{만}}$
5. 상호저축은행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times\frac{30}{1\text{만}}$
6. 신용협동조합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times\frac{30}{1\text{만}}$ (출자금만 취급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times\frac{3}{1\text{만}}$)

※ 비고

-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표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인할 수 있다.
- 공사는 보험사업자의 설립경과연수·신용도 및 재무상황의 건전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하 “표준비율”이라 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 설립후 10년 미만인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표준비율의 100분의 5를 인상
 - 인보협사업자중 누적결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자준비금의 순보험료식적립율에 따라 표준비율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인하
 - 손해보험사업자중 누적결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보유보험료 총액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에 따라 표준비율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인하

[별표 1의2] <신설 2002. 12. 3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식(제16조의2제1항관련)

부보금융기관	산 식
1. 은행	분기별특별기여금=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times\frac{1}{1천}\times\frac{1}{4}$
2. 증권회사	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 연평균잔액 $\times\frac{1}{1천}$
3. 보험사업자	연간특별기여금=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times\frac{1}{1천}$
4. 종합금융회사	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 연평균잔액 $\times\frac{1}{1천}$
5. 상호저축은행	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 연평균잔액 $\times\frac{1}{1천}$
6. 신용협동조합	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 연평균잔액 $\times\frac{1}{1천}$

[별표 2]

보험료의 산식(부칙 제6조 관련)

부보금융기관	산 식
1. 증권회사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times\frac{10}{1만}$
2. 보험사업자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총액 $\times\frac{15}{1만}$
3. 종합금융회사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times\frac{12}{1만}$
4. 상호신용금고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times\frac{15}{1만}$
5. 신용협동조합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times\frac{6}{1만}$

< 별 첨 3 >

정 관

전면개정 1998. 7. 22
개 정 2001. 2. 15
개 정 2002. 12. 31
(2003. 1. 1. 시행)
개 정 2003. 3. 12
(2003. 3. 18. 시행)
개 정 2003. 12. 26
(2003. 12. 30.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①이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03·12·26>

②공사의 영문명칭은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공사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소재지)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공사는 대구광역시에 영남지사를 둔다. <개정 2003·3·12, 2003·12·26>

제5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제6조(공고) 공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장 예금보험위원회 <개정 2002·12·31>

제7조(위원회의 설치등) ①공사는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2·15, 2002·12·31>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2·15>

제8조(위원회의 의결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12·26>

1. 정관의 변경
 2.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3.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개정 2002·12·31>
 4. 기타 법, 시행령이나 정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 ② 삭제 <2001·2·15>

제9조(위원회의 회의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1·2·15>

-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③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공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개최한다. <개정 2001·2·15>
- 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5>
- ⑥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와 회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의 성립과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2·15>
[단서신설 2002·12·31]

-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1·2·15>

제11조(부사장, 이사, 감사의 의견진술권등) ①공사의 부사장, 이사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1·2·15, 2002·12·31, 2003·12·26>

- ②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임원과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지정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1·2·15>

제12조(의결권 행사의 제한)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당해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1·2·15>

제13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01·2·15>

제14조(운영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1·2·15, 2003·12·26>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5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으로는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4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2·12·31>

②사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사와장은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2·12·31>

④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7조(사장, 부사장, 이사의 직무와 권한)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법령, 정관, 기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이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며,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2·12·31>

③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장이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31>

제18조(감사의 직무와 권한) ①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감사결과 징계 또는 변상조치 등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종합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사장, 부사장 및 이사는 자신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02·12·31>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제21조의2(겸직금지 의무등) ①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

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②공사의 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3·12·26]

제4장 이사회

제22조(이사의 구성) 공사에 사장, 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2·12·31>

제23조(이사의 기능)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24조(이사의 소집등) ①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결권행사의 제한) 이사의 구성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감사의 이사회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의사록) 이사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구성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이외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3·12·26>

제5장 업무와 그 집행 및 예금보험기금등의 설치 <개정 2002·12·31>

제29조(업 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업무
2. 기타 법과 다른 법령에서 공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신설 2003·12·26>
3.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개정 2003·12·26>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신설 2003·12·26>

제30조(업무의 집행) 법, 시행령, 정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3·12·26>

제31조(연차보고서) 공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중의 공사의 업무상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운용현황 등을 분석·정리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3·12·26>

제32조(예금보험기금등의 설치) ①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2·12·31>

②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법 제26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2·12·31>

③공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3·12·26>

제33조(예금보험기금등의 지출) ①예금보험기금은 법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02·12·31>

②상환기금은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그 지출로 한다.<신설 2002·12·31>

③법령에서 따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의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12·31>

제6장 회 계

제34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3·12·26>

제35조(회계의 원칙) 공사의 회계는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승인)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26>

②공사가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6>

제37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승인) ①공사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②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절차는 본 예산안의 승인절차에 의한다.

제38조(예비비) ①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예비비의 사용시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결산) ①공사의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회계원칙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3·12·26>

제40조(퇴직위로금)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는 사장이하 모든 임원과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잉여금의 처분) 공사는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1. 결손금의 보전

2.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에의 적립. 이 경우 양 기금에의 적립금의 배분은 공사 운영경비 배분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3·12·26>

[전문개정 2002·12·31]

제42조(회계규정) 공사의 회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회계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03·12·26>

제7장 보 칙

제43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장이 위촉한다.

③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예우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2·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2·12·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정관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로 본다.

③전무이사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사장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3·12>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부 금정41210-110(2003.3.18)에 의하여 2003년 3월 18일부터 시행>

부 칙 <개정 2003·12·26>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499(2003.12.30)에 의하여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